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새로운 취약청년인가? 정책소외청년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모색

 YouTube 생중계

※ 본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만 진행됩니다.

2022. **11. 15.** (화) 오후 3:00~5: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새로운 취약청년인가? 정책소외청년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모색

▶ YouTube 생중계

※ 본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만 진행됩니다.

2022.11.15.(화) 오후 3:00~5: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



프로그램

사회 | 하형석 기획조정본부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시간	식순	내용
15:00 ~ 15:10	개회사	개회사 김현철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10 ~ 15:25	주제발표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 (통일연구원)
15:25 ~ 15:40	주제발표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이상정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40 ~ 15:55	주제발표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박광옥 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5:55 ~ 16:00		휴식
16:00 ~ 16:50		좌장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패널토론1 (정책대상별)	북한배경청년 엄현숙 교수 (국립통일교육원) 청소년부모 박미진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계선지능청년 김동일 교수 (서울대학교)
	패널토론2 (정책영역별)	정신건강 김현수 임상교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금융취약 한영섭 이사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지원체계 김이배 전문위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6:50 ~ 17:1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7:10		폐회

Contents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주제발표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1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통일연구원)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29
이상정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53
박광옥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패널토론 1

1. 북한배경청년 79
엄현숙 교수(국립통일교육원)
2. 청소년부모 83
박미진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경계선지능청년 89
김동일 교수(서울대학교)

패널토론 2

1. 정신건강 95
김현수 임상교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 금융취약 101
한영섭 이사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3. 지원체계 109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주제발표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통일연구원)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과제” 발제¹⁾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통일연구원)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현황

☐ 연구 목적

-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의 변화 발생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정책대상의 개념

- ‘북한배경청년’은 19세에서 34세 이하(청년기본법 기준)의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출생 및 비(非)북한출생 청년으로 개념정의
 - 비북한출생 청년은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출생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한 청년과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
 - 본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분류를 간소화하여 북한출생 청년(이하 북한출생청년)과 중국 등 제3국출생 청년(이하 제3국출생청년) 두 하위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음

☐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 계층 비율

- 대한민국 입국 북한이탈주민(33,826명, 2022.3. 기준) 중 20~30대의 비율은 57.1%(19,294명)
 - 최근 5년간 20대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28%대를 기록, 30대 북한이탈주민의 비율 역시 28%대를 기록함

☐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 계층 비율

- 통일부 등록 만 15세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 29,880명(2021.5. 기준) 중 20대 12.3%, 30대 24.5%로 20~30대가 전체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36.8%를 차지하고 있음
 -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청년 계층이 많다는 점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짐을 의미함

1) 본 자료는 “청년통합연구1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의 세부보고서 ‘이우태, 조정아, 이규창, 이지순, 최규빈, 김정원, 박환보, 장인숙, 최종학. (202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 및 과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료의 인용은 보고서의 원문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 북한배경청년 중 북한이탈주민법상 수혜 자격 대상 여부 차이 존재

-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이나 남한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되지 않음
 -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 지위 획득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별 지원 서비스 유무와 내용이 달라짐
 - 이러한 조건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북한출신청년은 북한이탈주민법과 기타 법령에 의해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법 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무연고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탈북남성과 탈북여성 평등 및 탈북여성 모성 보호 규정 등에 의해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음
 - 고등교육법 내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 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응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규정, 병역법 내 북한출신 청년의 의지에 따른 병역 면제 조항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에 필요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 지원 내용에 포함되는 정착,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제3국출생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은 북한배경청년 집단의 사회적응과 자립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의미함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3자 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정부-지자체-민간의 거버넌스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됨
 - 중앙정부 차원(통일부 주무부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정착지원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됨
 -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상호작용을 하며 지원 정책과 관련한 의결과 조정이 이루어짐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총괄 및 조정업무(통일부), 예산배정(기획재정부),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및 청소년교육, 대안학교 인가(교육부), 생계 및 의료급여 지급(보건복지부), 취업보호담당관제(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기능이 분산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다보니 부처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유사 지원과 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음

- 문제점 개선을 위해 거버넌스 기능강화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다 세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북한배경청소년(19세 이상~24세 이하)과 북한배경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간 지원체계의 차이
 -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정부 및 민간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되나, 대상의 폭을 ‘청년’으로 확대할 경우 생애주기별, 출생별, 거주기간별 서비스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사회진출자가 많기 때문에 정체성 갈등, 교육공백, 사회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북한출생 또는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진행
-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출신지역 별 고른 표본 확보 어려움
 - 특히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 정확한 집계 및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표본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 참조

표 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108	100
성별	남자	35	32.4
	여자	73	67.6
연령	만19~24세	58	54.2
	만25~29세	26	24.3
	만30~34세	23	21.5
지역	수도권	98	91.6
	비수도권	9	8.4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5.9
	대졸이상	31	34.1
출신 지역	북한	90	84.1
	중국	17	16.9

2)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²⁾

가. 인구와 가족

(1) 결혼 필요성 및 결혼 적정시기

□ 결혼 필요성과 결혼 적정 관련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인식은 유사하나, 북한배경청년 집단 내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 존재

○ 일반청년의 경우, ‘결혼해야 한다’ 39.1%,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4.3%로 나타났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6%였고,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결혼해야 한다’ 37.7%,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7.5%로 나타났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7%였음

- 성별로 구분해보면, 일반청년의 경우 남자(42.1%)의 결혼 의향이 여자(35.7%)보다 6.5% 높았으며,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결혼 의향은 남자(54.3%)가 여자(29.6%)보다 24.7% 높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은 여자(66.2%)가 남자(40.0%)보다 26.2% 높아서 여자가 결혼에 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

○ 북한배경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더 큰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 존재

-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송금해야 한다는 의무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학군 및 임대아파트 거주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 경제적 불안, 주거지 문제, 가정폭력 경험 등이 결혼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지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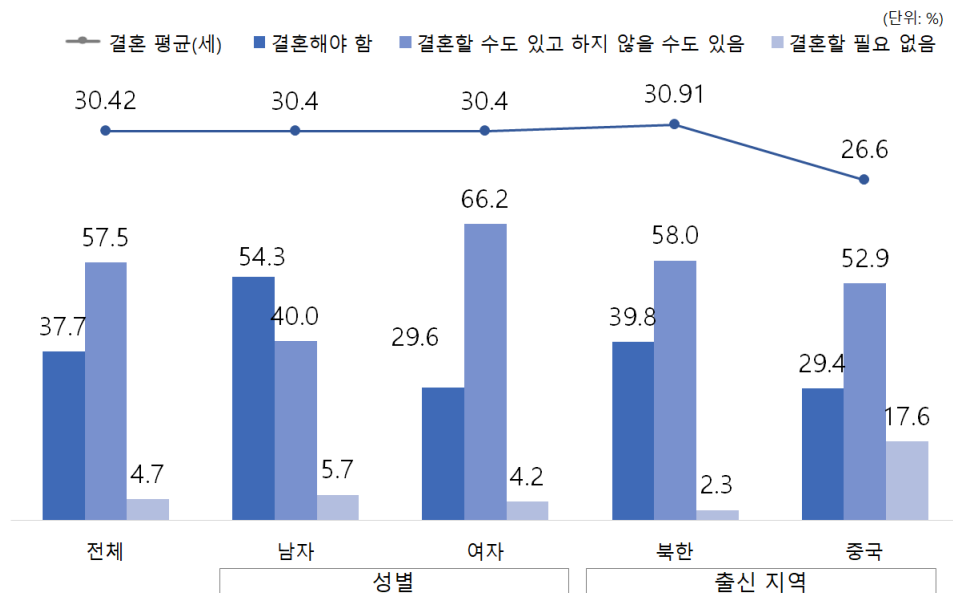


그림 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 본 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본 보고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발췌한 것임

(2) 해외 이주 고려 경험

- 해외 이주 고려와 관련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인식은 유사하나, 북한배경청년 집단 내 출신지에 따라 인식의 차이 존재
- 일반청년의 경우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이주 고려 경험이 ‘있다’ 12.2%, ‘없다’ 86.8%로 나왔고,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 34.7%, ‘없다’ 65.3%가 나왔음
- 북한배경청년 조사 결과를 성별로 보면 남자(40.6%)가 여자(28.0%)보다 높았고, 출신 지역별로는 중국 출신(68.8%) 북한 출신(27.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 이는 중국 등 제3국출신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언어와 성장한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남한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출신지 등 자신이 익숙한 사회로 복귀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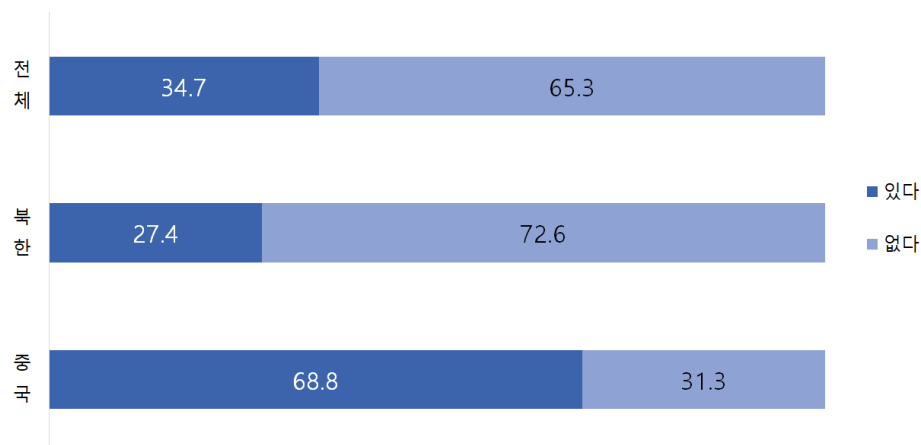


그림 2. 해외 이주 고려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나. 교육 및 훈련

(1) 한국에서의 최종학력

- 북한배경청년의 최종학력은 일반청년의 최종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북한배경청년의 과반수(55.3%)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5.5%, 대학원 졸업자도 2.1%임
- 이는 일반청년의 77.4%가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북한배경청년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게 함

- 북한배경청년 중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높고(25~29세: 58.3%, 30~34세: 33.3%), 30대의 석·박사 졸업자의 비율이 11.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배경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비율은 높아질 것이라 예상됨

□ 북한배경청년 집단 중 출생지역별로 한국에서의 학력 차이 존재

- 북한출생일수록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많으며 이 설문에 응답한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 중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한 명도 없었음
- 이는 전체적으로 중국출생 청년들에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자료로 보이고,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출생 청년들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한국 학교의 학업 수준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북한출생 청년들에게는 대학 학비 지원과 대학입학특례 지원이 있는 반면,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러한 경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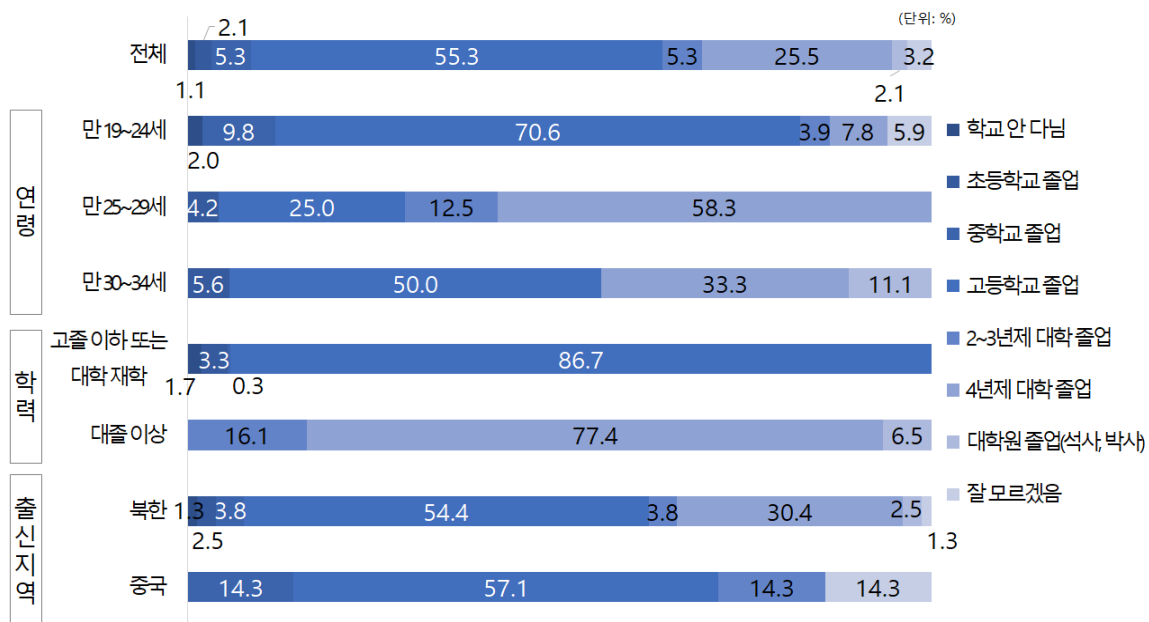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에서의 최종학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

□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은 대부분 대학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마련

- 북한배경청년의 대부분(87.7%)은 일반청년(25.3%)에 비해 대부분 대학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마련하고 있음
- 북한출생 청년들은 절대적 다수(96.8%)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나, 중국출생 청년들은 이의 절반 이하인 40%만이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일 가능성이 높음
-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56.1%) 대학 등록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북한배경청년들이 대학 등록금을 부모에게 지원받는 경우는 드물(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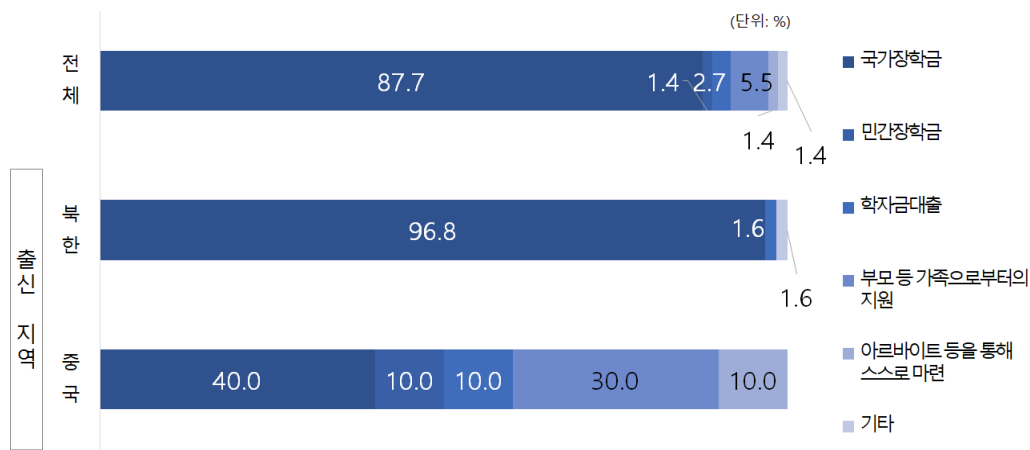


그림 4.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로 북한배경청년은 ‘대학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을 꼽음

-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배경청년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이 대학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41.4%)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는 북한출생청년들도 39.8%가 대학장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꼽음
- 이미 북한출생청년들에게는 대학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필요한 교재비, 생활비 등의 필요에 의해 장학금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이 응답 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음
- 또한 북한출생 북한배경청년에 비해 대학특례입학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이 그 상대적 불이익을 흔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특례입학보다 학비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필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표 2.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학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 (국가장학금, 학비 지원 등)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청년 진로관련 정책(진로상담, 진로교육 등)	청년 직업교육 정책(취업지원 센터, 일학습 병행제 등)	청년 인재양성 정책(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맞춤 연수 등)	대학특례입학
전체		99	41.4	4.0	10.1	23.2	16.2	5.1
성별	남자	34	50.0	0.0	11.8	23.5	11.8	2.9
	여자	65	36.9	6.2	9.2	23.1	18.5	6.2
연령	만19~24세	53	47.2	3.8	13.2	15.1	17.0	3.8
	만25~29세	24	37.5	4.2	4.2	25.0	20.8	8.3
	만30~34세	21	28.6	4.8	9.5	42.9	9.5	4.8
지역	수도권	90	42.2	3.3	10.0	22.2	16.7	5.6
	비수도권	8	25.0	12.5	12.5	37.5	12.5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3	43.4	5.7	13.2	17.0	15.1	5.7
	대졸 이상	31	35.5	3.2	6.5	35.5	12.9	6.5
출신 지역	북한	83	39.8	2.4	9.6	25.3	16.9	6.0
	중국	15	46.7	13.3	13.3	13.3	13.3	0.0

다. 경제와 고용

(1) 물질적 박탈감

□ 북한배경청년은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적 박탈감 경험

○ 북한배경청년들의 13.3%는 주거와 관련한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 이는 일반청년의 1.4%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며,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북한배경청년들의 연령대별로 주거 관련 비용과 관련한 물질적 박탈 경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만 25~29세 청년층에서 이러한 경험 비율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해당 연령대의 많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 또는 취업 등 사회에 막 진출하고, 주거지도 독립을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자립하지 못한 시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고, 생활비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주거 관련 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주거비용 이외에도 ‘돈이 없어 집의 냉/난방 유지 못함’, ‘돈이 없어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시 비용 지불 못함’, ‘돈이 없어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함’, ‘돈이 없어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함’ 등 물질적 박탈감 측정 항목 대부분에서 북한배경청년의 박탈감은 일반청년에 비해 높게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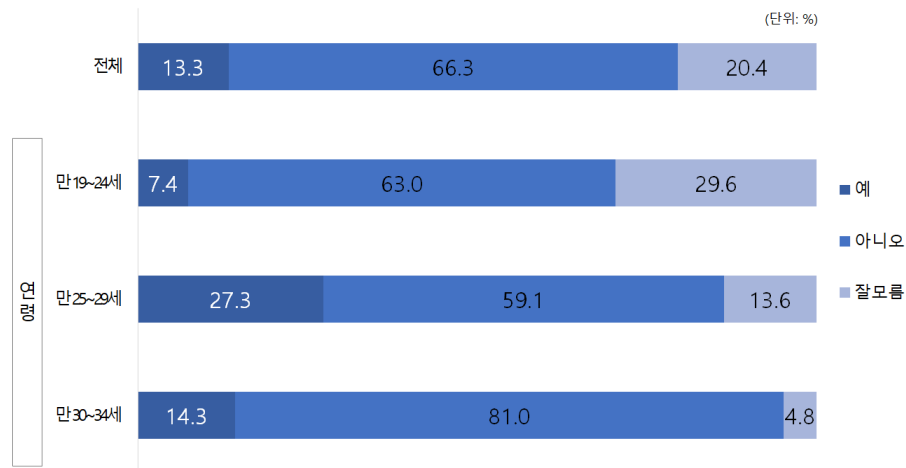


그림 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_ 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 근속년수

□ 일반청년에 비해 짧은 북한배경청년의 근속년수

- 북한배경청년들의 근속년수는 평균 16.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청년들의 평균 근속년수인 35.7개월의 50% 수준에 불과함
- 또한 북한청년들의 근속년수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근속년수는 평균 10.7개월로 남성의 28개월에 비해서도 매우 짧았음
- 근속년수는 해당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만족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여성청년들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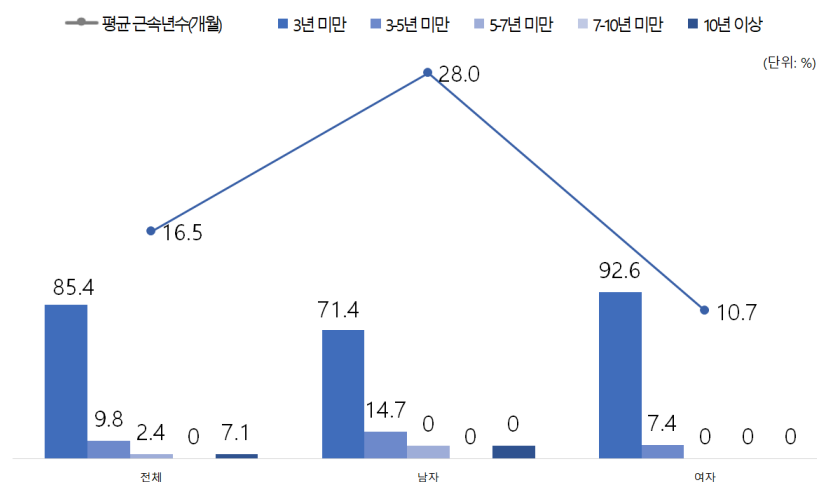


그림 6.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2) 근속년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 고용 형태

□ 일반청년에 비해 높은 비정규직 근로 형태

-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정규직은 48.7%, 비정규직은 51.3%로 나타났고, 일반청년의 경우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74.7%가 정규직이었고 25.3%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처해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북한배경청년 집단 내 학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자들과 비수도권 거주자들에게서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북한배경청년들 내에서도 학력이 낮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함

표 3.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4) 고용형태-임금근로자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39	48.7	51.3
성별	남자	14	64.3	35.7
	여자	25	40.0	60.0
연령	만19~24세	17	41.2	58.8
	만25~29세	12	50.0	50.0
	만30~34세	10	60.0	40.0
지역	수도권	34	50.0	50.0
	비수도권	5	40.0	6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8	38.9	61.1
	대졸 이상	16	50.0	50.0
출신 지역	북한	34	50.0	50.0
	중국	5	40.0	60.0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4) 교육수준 대비 업무·직무 수준

- 북한배경청년은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교육수준에 준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의 54.8%는 일자리의 업무 수준이 대체로 자신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고 응답했고, 14.3%는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했음.
 - 반면에 31.0%는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했음. 일반청년의 경우 72.8%가 자신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고 응답했고, 23.9%가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낮다고 인식했으며, 교육수준보다 높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함
 - 이처럼 북한배경청년 집단에서 일반청년에 비해 교육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업무가 교육수준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남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북한배경청년들에게 교육기관에서 배운 내용이나 자신이 취득한 학력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업무에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올 경우, 자신이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청년들은 학교 진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교육불일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나 직무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현재 직장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함

표 4.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8-1) 교육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교육수준 보다 낮다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	나의 교육수준 보다 높다
전체		42	31.0	54.8	14.3
성별	남자	13	30.8	61.5	7.7
	여자	29	31.0	51.7	17.2
연령	만19~24세	19	42.1	52.6	5.3
	만25~29세	13	23.1	46.2	30.8
	만30~34세	10	20.0	70.0	10.0
지역	수도권	37	35.1	48.6	16.2
	비수도권	5	0.0	10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0	35.0	60.0	5.0
	대졸 이상	18	27.8	44.4	27.8
출신 지역	북한	37	27.0	56.8	16.2
	중국	5	60.0	40.0	0.0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라. 주거

(1) 주거 형태

□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모두 ‘아파트’ 중심의 주거 형태

-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현재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61.9%, ‘원룸(다가구)’ 15.2%, ‘다세대/빌라’ 10.5%, ‘기숙사’ 4.8% 순으로 집계되었고, 일반청년의 경우 ‘아파트’ 46.7%, ‘다세대/빌라’ 25.3%, ‘원룸(다가구)’ 13.4%, ‘단독주택’ 9.0%, ‘오피스텔’ 4.4% 순으로 집계됨
-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거형태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일반청년이 다세대/빌라가 원룸보다 비율이 높았다면, 북한배경청년은 원룸이 다세대/빌라보다 높은 특징이 있음
- 단독주택은 일반청년(9.0%)이 북한배경청년(1.0%)보다 높았고, 오피스텔도 일반청년(4.4%)이 북한배경청년(2.9%)보다 높았음. 기숙사는 북한배경청년(4.8%)이 일반청년(0.2%)보다 높았음
-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정착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는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이었지만, 북한배경청년들은 개인의 생활 여건과 행동반경에 따라 주거를 이동했고, 주거비용을 줄이느라 작은 평수의 집을 빌려 여럿이 함께 살거나, 세어하우스나 그룹홈에서 공동체 생활하다 LH의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독립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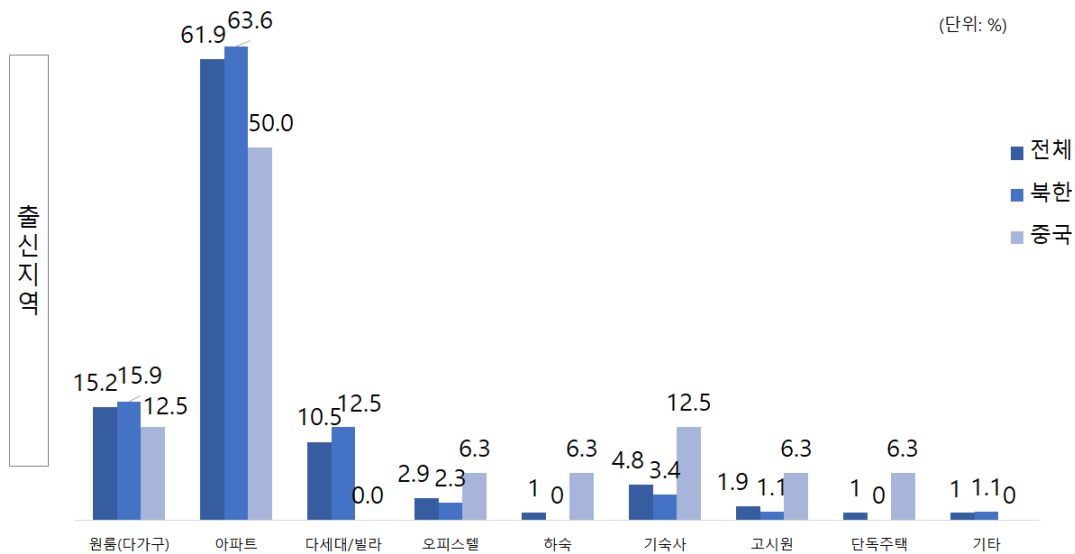


그림 7. 주거 형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 본인 명의의 집 소유 필요성

□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는 질문에 대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모두 공통적으로 높으나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이 존재

○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에’ 30.0%,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 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5.0%, ‘자가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25.0%,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5.0%였음

-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집값에 대한 부담감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청년(55.1%)이 북한배경청년(30.0%)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가 보유보다 거주 의 질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북한배경청년(35.0%)이 일반청년(14.4%)보다 2배나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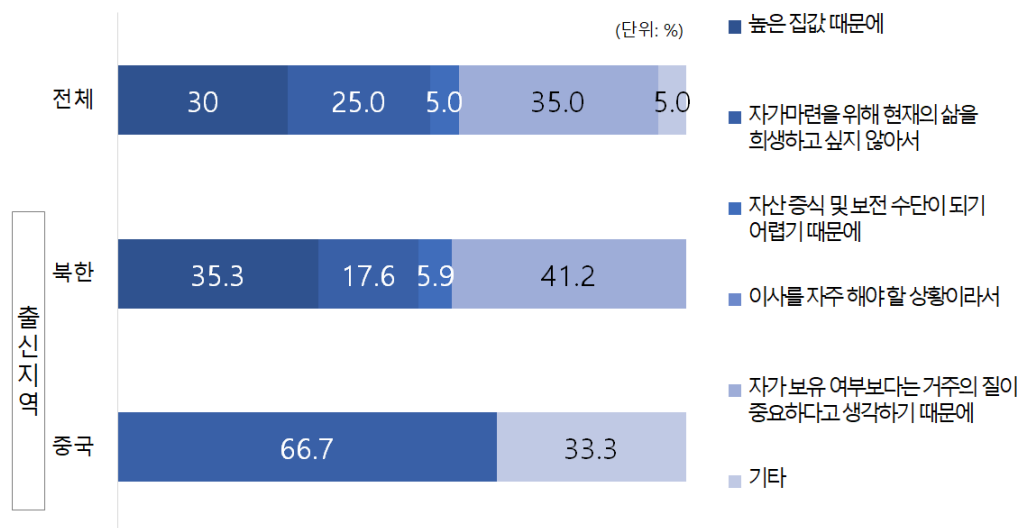


그림 8.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마. 가치관

(1) 선호하는 가치: 일 중시 vs. 여가 중시

□ 북한배경청년, 일반청년에 비해 일 중심 사고 경향

○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일 중심 사고를 하는 경향과 여가 중심 사고 경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일반청년들은 두드러지게 여가 중심 사고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임

-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4.0%인데 비해 일반청년들의 24.5%만 응답함

-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9.6%인데 비해 일반청년의 51.1%가 응답함

표 5. 선호하는 가치_ 일 중시 VS 여가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				여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106	6.6	15.1	12.3	26.4	21.7	11.3	6.6
성별	남자	34	5.9	17.6	14.7	23.5	17.6	11.8	8.8
	여자	72	6.9	13.9	11.1	27.8	23.6	11.1	5.6
연령	만19~24세	57	8.8	15.8	10.5	22.8	22.8	8.8	10.5
	만25~29세	26	3.8	11.5	15.4	38.5	15.4	15.4	0.0
	만30~34세	22	4.5	18.2	13.6	22.7	27.3	9.1	4.5
지역	수도권	96	6.3	15.6	10.4	28.1	22.9	10.4	6.3
	비수도권	9	11.1	11.1	33.3	11.1	11.1	11.1	11.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20.3	13.6	15.3	22.0	8.5	16.9	3.4
	대졸 이상	31	9.7	32.3	22.6	12.9	19.4	3.2	0.0
출신 지역	북한	88	8.0	15.9	13.6	26.1	17.0	11.4	8.0
	중국	17	0.0	11.8	5.9	29.4	47.1	5.9	0.0

(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 북한배경청년, 일반청년에 비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식

○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춘 정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음

- 일반청년들 중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1%인데 비해 북한배경청년의 36.5%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함

- 북한배경청년 중 30.8%가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응답했음에 비해 일반청년은 49.2%가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응답함

- 특히 북한배경청년 남성들에게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주관적 인식 수준에서 북한배경청년들 중 남자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함

표 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07	15.9	20.6	32.7	18.7	12.1
성별	남자	34	26.5	26.5	23.5	14.7	8.8
	여자	73	11.0	17.8	37.0	20.5	13.7
연령	만19~24세	58	17.2	22.4	31.0	15.5	13.8
	만25~29세	26	19.2	19.2	30.8	15.4	15.4
	만30~34세	22	9.1	13.6	40.9	31.8	4.5
지역	수도권	97	16.5	17.5	34.0	19.6	12.4
	비수도권	9	11.1	44.4	22.2	11.1	11.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15.0	23.3	33.3	15.0	13.3
	대졸 이상	31	16.1	19.4	22.6	25.8	16.1
출신 지역	북한	89	13.5	20.2	34.8	19.1	12.4
	중국	17	29.4	17.6	23.5	17.6	11.8

(3)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 북한배경청년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로 '존중'으로 응답

○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를 순서와 상관없이 세 가지를 택하라는 질문에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에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일반청년 중 '경제적 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꼽는 이들(49.0%)이 가장 많았는데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존중'(46.2%)에 가장 많이 응답함

- 북한배경청년들도 '경제적 부'가 중요한 가치라 응답한 경우(43.3%)가 많았지만 이보다 '존중'에 응답한 이가 더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북한배경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배경'을 드러낼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으로 인해 북한배경과 상관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모두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됨

표 7.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부	공정	노력	다양성	신뢰	자립	자유	재미	정의	존중	자속 가능성	평등
전체		104	43.3	33.7	21.2	33.7	25.0	7.7	26.9	4.8	16.3	46.2	10.6	28.8
성별	남자	33	54.5	30.3	15.2	27.3	18.2	9.1	33.3	12.1	18.2	45.5	6.1	24.2
	여자	71	38.0	35.2	23.9	36.6	28.2	7.0	23.9	1.4	15.5	46.5	12.7	31.0
연령	만19~24세	56	39.3	35.7	19.6	33.9	23.2	3.6	35.7	3.6	12.5	48.2	8.9	32.1
	만25~29세	26	46.2	26.9	15.4	34.6	26.9	7.7	23.1	11.5	15.4	50.0	15.4	26.9
	만30~34세	22	50.0	36.4	31.8	31.8	27.3	18.2	9.1	0.0	27.3	36.4	9.1	22.7
지역	수도권	95	43.2	31.6	22.1	34.7	26.3	6.3	27.4	5.3	17.9	45.3	10.5	27.4
	비수도권	9	44.4	55.6	11.1	22.2	11.1	22.2	22.2	0.0	0.0	55.6	11.1	44.4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8	43.1	37.9	19.0	32.8	31.0	6.9	29.3	3.4	8.6	43.1	13.8	27.6
	대졸 이상	30	43.3	26.7	20.0	50.0	13.3	10.0	23.3	10.0	20.0	53.3	3.3	26.7
출신 지역	북한	87	43.7	31.0	21.8	36.8	28.7	9.2	26.4	4.6	17.2	43.7	11.5	25.3
	중국	17	41.2	47.1	17.6	17.6	5.9	0.0	29.4	5.9	11.8	58.8	5.9	47.1

바. 관계 및 참여

(1) 가족과의 대면 교류

-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를 평소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과 일반청년들의 응답 경향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
-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가족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이고 거의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이 36.1%인 반면, 일반청년들은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가 0.2%에 불과하고 거의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이 73.2%에 달함
-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는 한국에 가족이 없는 경우일 수 있으나 1년에 한두 번 교류한다는 응답도 9.3%였으며, 이는 일반청년의 0.3%와 크게 비교되는 수치임
- 이로써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한국에 가족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교류 빈도가 일반청년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8. 대면교류 - (1) 가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체		108	17.6	9.3	6.5	12.0	18.5	36.1
성별	남자	35	11.4	17.1	5.7	5.7	20.0	40.0
	여자	73	20.5	5.5	6.8	15.1	17.8	34.2
연령	만19~24세	58	10.3	10.3	5.2	17.2	17.2	39.7
	만25~29세	26	23.1	7.7	7.7	3.8	19.2	38.5
	만30~34세	23	30.4	8.7	4.3	8.7	21.7	26.1
지역	수도권	98	18.4	7.1	6.1	11.2	20.4	36.7
	비수도권	9	11.1	33.3	0.0	22.2	0.0	33.3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18.3	8.3	3.3	16.7	18.3	35.0
	대졸 이상	31	12.9	9.7	9.7	6.5	22.6	38.7
출신 지역	북한	90	20.0	8.9	5.6	13.3	16.7	35.6
	중국	17	5.9	11.8	5.9	5.9	29.4	41.2

(2) 소통·고립 정도에 대한 인식

□ ‘나는 혼자라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청년의 반응과 북한배경청년의 차이가 드러남

○ 일반청년의 경우 13.5%가 ‘가끔’(11.7%) 혹은 ‘항상 그렇다’(1.8%)라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35.2%가 ‘가끔’(26.9%), ‘항상 그렇다’(8.3%)라고 응답함

- 북한배경청년 중 남자가 여자보다 혼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욱 많았는데, 남자는 40.0%가 ‘가끔’(25.7%) 혹은 ‘항상’(14.3%) 혼자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32.9%가 ‘가끔’(27.4%), ‘항상’(5.5%) 그렇게 느낀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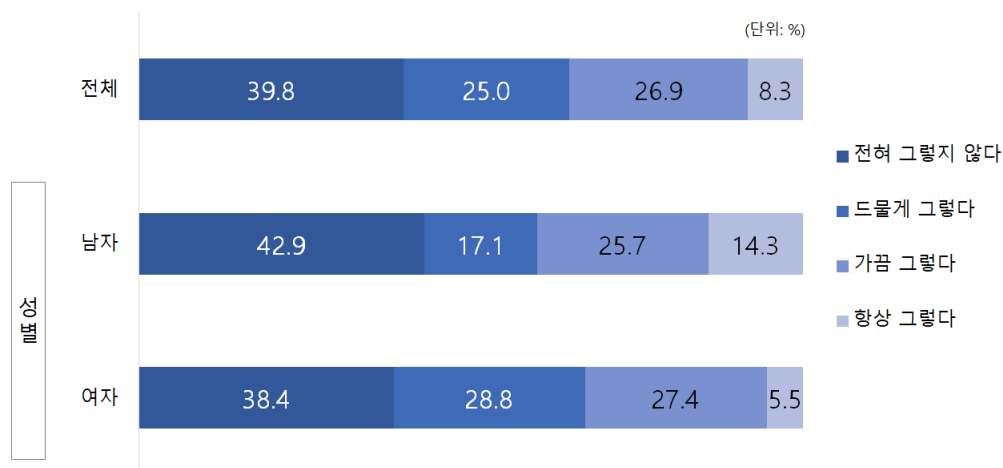


그림 9. 평소 감정 -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 ‘평소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청년의 반응과 북한배경청년의 차이가 드러남

○ 일반청년은 14.9%가 ‘가끔’(13.5%), ‘항상’(1.4%)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북한배경청년은 29.0%가 ‘가끔’(23.4%), ‘항상’(5.6%) 그렇다고 응답함

- 이는 일반청년들보다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평소에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음

- 전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일반청년은 54.1%인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37.4%만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때가 없다고 응답해 북한배경청년이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평소 감정 -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107	37.4	33.6	23.4	5.6
성별	남자	34	29.4	32.4	29.4	8.8
	여자	73	41.1	34.2	20.5	4.1
연령	만19~24세	58	32.8	31.0	27.6	8.6
	만25~29세	26	53.8	23.1	23.1	0.0
	만30~34세	22	31.8	54.5	9.1	4.5
지역	수도권	97	39.2	35.1	20.6	5.2
	비수도권	9	22.2	22.2	44.4	11.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36.7	31.7	26.7	5.0
	대졸 이상	31	41.9	41.9	12.9	3.2
출신 지역	북한	89	39.3	36.0	20.2	4.5
	중국	17	29.4	23.5	35.3	11.8

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법제 개선 방안

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황 통계 세분화

- 청년기본법상 연령 구별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 통계 세분화 필요
 - 청년기본법의 대상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며, 연령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감안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의 연령대를 19~24세, 25~29세, 30~34세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19~24세의 청년에게는 교육, 25~29세의 청년에게는 취업, 30~34세의 청년에게는 결혼·독립 지원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통계는 연령대를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법률상 청년(19~34세) 연령의 정확한 통계가 취합되지 않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통계라도 있지만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전체 입국자가 몇 명인지, 또한 19~24세, 25~29세, 30~34세에 해당하는 제3국출생청년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처럼 북한배경청년의 연령대를 출신지별로 세분화해서 연령대별 교육, 취업, 결혼·독립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북한이탈주민 법적 범주에 제3국출생청년 포함

-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 충돌하기 때문에 보완 필요
 - 북한이탈주민법 내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는 조항을 근거로 이중국적 내지 복수국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한국의 국적법은 국적 문제에 있어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다가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이중국적제도를 도입하여, 이중국적 내지 복수국적자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이 충돌함
 - 정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신중한 접근 입장
 -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받게 된다는 의견 존재
 -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남한출생청년 보다는 북한출생청년과 처한 상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제3국출생청년들은 북한출생청년에 비해 언어문제,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출생청년보다 법적인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측면도 존재함
 - 법제 개선 방식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방식과 북한이탈주민법의 특정 조항만 개정하여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
 - 북한이탈주민법의 특정 조항만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착지원규정(제도)을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이 같은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이 경우 국적법상의 이중국적 제도와 합치되도록 하여여 함(표 10 참조)

표 10.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나. <u>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국적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u>

2)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가. 북한배경청년 지원체계 거버넌스 구축

- 중앙부처, 지방정부, 하나센터 등 각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체계의 각 수준별 업무 역할 재정립 필요
 -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같은 대상자들에게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하는 상황 발생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높은 단계의 기술 습득이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 도출이 쉬운 분야의 지원 쏠림 현상이 발생함
 - 정착 초기 필요한 직업역량 강화 교육, 학력과 경력을 쌓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장기 근속 등에 필요한 교육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
-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관련 총괄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총괄기능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직접지원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 일자리 창출, 각 부처 간 협업 기능을 강화할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함
 - 통일부는 정착지원 현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부처,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함
 -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해당 업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에 힘쓰고, 하나센터의 취업전문상담사가 직업역량강화를 연계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역할 조정 필요함
-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의 허브로서 기능 강화가 요구
 - 남북하나재단은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하여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고 있음
 -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영역의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협의체인 정착지원협의회에 남북하나재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정착지원 서비스의 가장 일선에 있는 하나센터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북한배경청년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가. 임신 및 출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에 대한 정보 강화

- ☐ 우리 사회 청년들의 주요 이슈인 임신 및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 공통의 문제
- ☐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북한배경청년은 임신과 출산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겪는 어려움 역시 일반청년이나 북한배경청년이나 동일한 문제임
 -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북한배경청년은 임신과 출산에서 한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임신 당사자가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센터와의 상시 면담을 통해 정보 알리를 꾸준히 해야 함
 - 기존에 갖추고 있는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 취업의 여건이 미흡한 경우 등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한부모 가정 또는 미혼모 가정을 포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수행되려면 우선 북한배경청년의 다양한 가족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나. 대학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확대

- ☐ 북한배경청년들은 대학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을 교육 분야 지원 1순위로 우선시함
- ☐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학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비나 생활비 지원 차원의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대학 장학금 혹은 교육비 지원 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됨
- ☐ 대학등록금 지원 기한 제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졸업 전에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8학기 내에 졸업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제도임
 - 북한배경청년의 1/3 정도가 휴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휴학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이거나 북한이탈주민 전체 비율에서 여성이 많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 중 출산과 육아를 담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함
 - ☐ ‘8학기 까지 등록금 지원’을 하는 현 규정보다는 휴학 기간을 4학기가 아닌 6학기 또는 8학기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7년 또는 8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등록금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 현장성 있는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준비 상담 등에 대해 참여 대비 효과에 상대적으로 낮은 호응
- 북한배경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진로 선택이나 취업 관련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인에게 진로지도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제한되어 있음
 -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현장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학교, 공공기관, 학원 등 여러 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라. 청년 자립 지원 정책 마련

- 북한배경청년의 경제 및 고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현재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취업이나 구직활동 지원은 주로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교육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님
 -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청년 자립수당과 같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북한배경청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나 청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생활비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 대출 한도가 크지 않고 취업이나 재학 여부에 따른 제약도 존재함
 -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이나 이자율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재단을 통한 대출 확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마. 북한배경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 마련

- 한국 사회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북한배경청년들은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
- 북한배경청년에게 남한의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 등 기본적인 고용노동교육이 요구됨
 - 북한배경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 진출 직전 또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고용노동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함

- 북한배경청년들은 고용 및 노동현장에서 유사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부족한 실정임
- 북한배경청년들이 취업 이후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러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나 상시 문의 창구 개설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바. 창업지원아카데미 신설

- 북한배경청년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창업 과정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창업지원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탈대학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를 모티브로 하여 북한배경청년 창업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기업가육성 센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기업가 역량과 자격(법인 허가증 및 정관)이 있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다소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3국출생청년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음
- 북한배경청년 창업아카데미는 출신지역(북한 혹은 제3국)에 제한 없이 만 35세 미만의 국내 청년이면 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북한배경청년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초창기 창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우선 주 타겟으로 함. 여기서는 시장조사, 벨류 포지셔닝, 기초 회계, 창업 공간 활용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고 국내외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대학 창업 동아리 네트워킹, 기 창업자와의 창업과제 수행 등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사. 세어하우스 공급 개선

- 북한배경청년들의 주거 유형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며, '세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고려해 볼만함
- 북한배경청년 가운데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좁은 평수의 집에서 공동거주하거나, 그룹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세어하우스는 임대료 부담과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함으로써 1인 가구의 정서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음
- 한집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한다는 점에서 세어하우스와 공동거주의 형태가 유사하지만, 세어하우스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주거 환경이 공동거주 형태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청년 세어하우스의 공급 확대를 통해 북한배경청년이 공동거주 유형을 선택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아. 청년 주거상담센터의 확대 운영

-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 임대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편
- 북한배경청년은 지원받았던 임대아파트를 반납하여 그룹홈에서 생활하다 뒤늦게 주거독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청년들에게 주거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시행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
- 청년들에게 주거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시행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

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다변화

-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 임대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편
- 북한배경청년들은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까지 다양한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여, 심리적 외상(trauma)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충격이 내재되는 경우가 많음
- 북한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남한에 정착한 북한배경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고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심리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무연고 단독 입국한 경우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함. 고독과 외로움이 일탈로 연결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북한배경청년 집단이 갖는 사회적 외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할 것이며, 심리케어 지원이 단순히 개인 심리 치유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북한배경청년을 이해하고, 동시에 북한배경청년이 우리 사회를 더 이해하게 되는 상호소통의 기회로 작용되어야 함
- 심리적 외상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상담기관 알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집단 상담, 집단 관찰, 동료(또래) 멘토링(peer mentoring), 상담캠프 등을 통해 '집합적 심리 치료(collective psychological treatment)'의 차원에서 심리적 외상을 다룰 필요가 있음
- 북한배경청년들이 심리적 불안정 또는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문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는 온라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주제발표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이상정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발제¹⁾

이상정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 정책 대상의 개념과 특성

- 청소년부모는 그 자신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임과 동시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과 같은 부모 역할과 자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의 연령 범주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연령과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과 중첩되기도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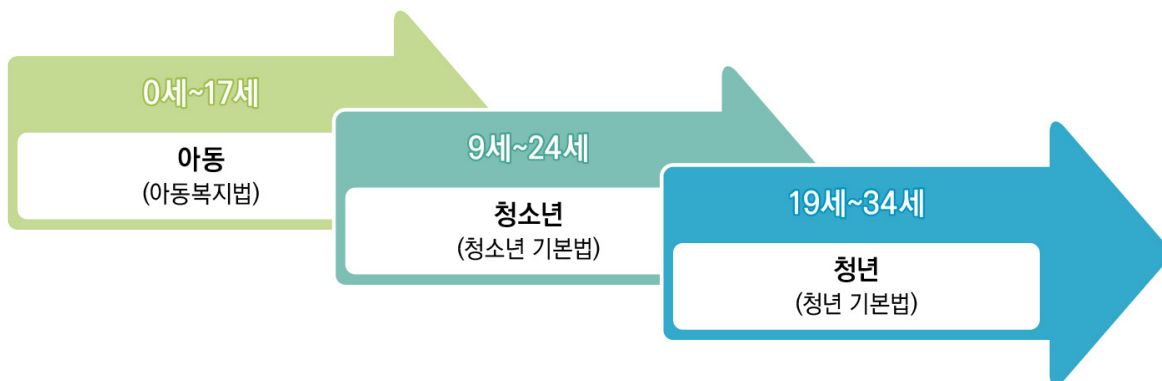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부모 연령

* 출처: 저자 작성.

1) 본 자료는 "청년종합연구1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의 세부보고서 '이상정, 하태정, 류정희, 변수정. (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료의 인용은 보고서의 원문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정책 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1)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 「청년기본법」상의 정책 대상인 19세~34세의 청년은 사업에 따라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20년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교육, 참여와 권리 등의 영역에서 179개 사업, 16.9조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과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270개 사업, 22조여원)됨(관계부처합동, 2020.1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1.8.31.)
- 정책 대상으로서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5세~34세에 해당하는 개별 청년은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모는 모의 연령이 25세~34세 속하는 청년·청소년부모는 청소년부모 사업이나 정책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청소년부모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청년가구는 약 2만 6천여 가구, 전체 청년부모(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중 4.7%로 확인됨.
- 청년·청소년 부모가구인 18,334가구(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의 3.3%)가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즉,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의로 인해 1만 8천여 가구가 유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임.

표 1. 청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추정치(2017~2020)

(단위: 가구)

연 도	부모 모두 34세 이하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추정치	부모 중 한 명이 24세 이하인 가구 추정치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추정치
2020	7,876	26,210	551,827
2019	9,991	31,599	613,899
2018	12,167	37,619	690,588
2017	14,233	43,660	791,973

* 출처: 통계청 (1997~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2) 동일 대상, 지원의 격차

- 청소년부 또는 모, 청년 부 또는 모는 이른 시기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 돌봄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학업, 취업과 같은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정책 대상임(류정희 외, 2022).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그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청년과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옴.
- 저소득 청년·청소년 부모(부부)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이전에는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그러나 중앙부처 차원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가 받는 지원과 비교할 때 여전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사업’에서는 청소년부모가구의 기준 소득이 60% 이하일 때,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추가금액이나 자립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 가구 수가 1명(배우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5만원~25만원의 지원 금액의 격차가 발생함. 청년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은 것임.
- 이러한 지원상의 격차는 청소년부모가 비혼 동거 상태로 남게 하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배보은, 2022).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청소년이 포함된 저소득 청소년·청년 부모가구는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음.

표 2.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구분		근거법	부모 연령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아동 연령	추가금액	총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청년 한부모	한부모가족 지원법	만 25~34세	52% 이하	만 5세 이하	10만원	3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5만원	25만원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60% 이하	만 18세 미만	15만원	35만원
						10만원 *취업·학업 등 자립할 동시	45만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 부모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사실혼 인정	60% 이하	만 18세 미만	-	20만원

* 출처: 류정희 외.(20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지원체계 부재

- 2022년 7월 도입된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청소년부모 대상의 특화사업은 전국 93개소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족역량강화 사업이 거의 유일함. 그러나 이 사업에도 한계는 존재함.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되 시간, 횟수,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 또

한 건강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청소년부모 사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는 점 등임.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 대부분은 청소년부모를 특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특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주거와 생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소득과 연관된 근로 지원에 있어서도 영유아 자녀 돌봄 문제를 전혀 배려하고 있지 못함.

□ 무엇보다 청소년부모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부처별, 사업별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 또는 민간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주의 기반의 현재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류정희 외, 2022).

□ 또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관련 현금성 지원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출산, 자녀 양육 과정의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및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가 부재하여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 스스로의 성장과 자립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배보은, 2022).

표 3.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구분	정책·사업	주요 내용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 만 19세 이하 120만원(일반 임신부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시 20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수급, 차상위 가구 대상 • 본인부담금 有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2021.4.1. 기준, 30개 보건소 시행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수급, 차상위 가구 등
양육	아동수당	• 8세 미만 월 10만원
	양육수당(영아수당)	• 10~30만원 월령에 따른 차등 지급
	아동양육비	• 소득기준, 한부모 35만원/청소년부모 20만원 등
	아이돌봄서비스	•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有
주거	LH임대지원,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 수급가정 우선 • 자부담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이 (청소년)한부모 중심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법정대리인동의/대리 필요
생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 소득기준(II유형, 특정 대상 중 청소년부모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전국 159개소 운영
가족역량강화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청소년부모 대상 신규(2022)사업
	법률지원	• 소득기준, 시간/횟수/기간 제한 有
	학습정서지원(자녀대상)	• 건강가정센터 93개소 제공

* 출처: 각 사업별 내용을 검토하여 저자 작성.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일반 청년부모와의 비교

□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부모(부 또는 모가 1998년 이후 출생자인 경우)가구의 어머니 대상으로 2022년 6월 2일 ~ 2022년 8월 5일까지(약 2개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유효표본은 101명임.

□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는 총 1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일부 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의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이에 따라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본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음.

① 응답자 특성

□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응답자 전체의 64.4%는 교육 수준이 고졸 이하였으며, 첫째 자녀의 연령은 전체 응답자의 93.1%가 만1세에서 3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됨.

표 4. 응답자(청소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¹⁾		101	(100.0)
가구 유형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72	(71.3)
	부모 중 한 명만 만 24세 이하	29	(28.7)
모 연령(응답자)	만 24세 이하	100	(99.0)
	만 25세 이상	1	(1.0)
교육 수준 ²⁾	고졸 이하	65	(64.4)
	대학 이상	36	(35.6)
자녀 수	1명	84	(83.2)
	2명 이상	17	(16.8)
부 연령(배우자)	만 24세 이하	73	(72.3)
	만 25세 이상	28	(27.7)
첫째 자녀 연령	임신중	0	(0.0)
	만 1세 미만	0	(0.0)
	만 1세~3세 미만	94	(93.1)
	만 3세 이상	7	(6.9)
현 배우자가 첫째 자녀의 친부인지 여부	예	98	(97.0)
	아니오	3	(3.0)

주: 1) 조사대상 모집시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사연도(2022년)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25세 이하(1998년 이후 출생자)인 자를 모집하였음. 이에 따라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1998년 출생자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만 24세 이하로 계산하였음.

2) 교육 수준 중 대학 이상에는 대학 진학 후 중퇴/휴학인 경우도 포함됨.

-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가 만 25세 이상이었으며, 응답자 중 69.3%는 대학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음.

표 5. 응답자(일반 청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54	(100.0)
모 연령	만 24세 이하	4	(2.0)
	만 25세 이상	150	(98.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7	(30.7)
	대학 이상	107	(69.3)
자녀 수	1명	84	(55.1)
	2명 이상	70	(44.9)

주: 교육 수준 중 대학 이상에는 대학 진학 후 중퇴/휴학인 경우도 포함됨.

② 주거

- 독립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거주지 점유형태(주거비용 지불 방식)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청소년부모의 주거는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였음.
- 청소년부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가 24.0%, 자가인 경우가 12.0% 순이었음. 그러나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자가가 33.5%, 보증금있는 월세가 16.4%를 차지함.

표 6.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주거비용 지불 방식)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청소년부모	75 (100.0)	9 (12.0)	18 (24.0)	43 (57.3)	4 (5.3)		1 (1.3)
일반 청년부모	140 (100.0)	48 (33.5)	65 (47.4)	23 (16.4)	0 (0.0)	2 (1.4)	2 (1.2)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사글세, 연세, 일세 등'의 보기 항목을 제외하고 문항을 구성함.

3) 현재 거주지를 '나(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 주거 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 점유 형태를 보면,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58.1%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일반 청년부모는 전세가 응답자의 46.9%였고 자가 32.7%, 보증금이 있는 월세 18.9% 순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전세나 자가 형태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월세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청년부모는 청소년부모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측됨.

표 7. 주거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 거주지 점유 형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청소년부모	43 (100.0)	4 (9.3)	12 (27.9)	25 (58.1)	2 (4.7)		0 (0.0)
일반 청년부모	95 (100.0)	34 (32.7)	43 (46.9)	17 (18.9)	0 (0.0)	1 (1.4)	0 (0.0)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사글세, 연세, 일세 등'의 보기 항목을 제외하고 문항을 구성함.
 3) 현재 거주지를 '나(또는 배우자)의 집(자가, 전세, 월세 등 관계없이)'에 응답한 사례 중에서 분석한 결과임.

③ 건강

□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8.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8.2%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표 8.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청소년부모	101 (100.0)	22 (21.8)	79 (78.2)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78 (48.6)	76 (51.4)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216)를 의미함.

□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6.5%에 불과한 반면,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약 47%가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지 않았음.

○ 또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서도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남.

-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 모두 모두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경제적 여유나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약 50%로 나타났고, 일반 청년부모는 약 17%만이 해당됨.

표 9.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조치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기타
청소년부모	101 (100.0)	50 (49.5)	33 (32.7)	15 (14.9)	3 (3.0)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30 (83.5)	18 (12.1)	6 (4.4)	0 (0.0)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표 10.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기타
청소년부모	51 (100.0)	15 (29.4)	11 (21.6)	0 (0.0)	21 (41.2)	4 (7.8)
일반 청년부모	24 (100.0)	2 (7.2)	3 (10.3)	0 (0.0)	19 (82.6)	0 (0.0)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표0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 응답자의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61.4%가 우울 위험군(CESD-11, 변환점수 16점 이상)으로 나타났음. 반면 일반 청년부모는 우울 위험군이 전체 응답자의 13.7%로 나타남.

표 11. 응답자의 우울 정도

(단위: 명, 점, %)

구 분	사례수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우울 정도	
					우울 위험군 아님	우울 위험군
청소년부모	101	20.0	21.3	14.0	39	62
					(38.6)	(61.4)
일반 청년부모	154	5.5	7.8	8.6	132	22
					(86.3)	(13.7)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우울 정도는 CESD-11을 사용하였음. 표에서 제시한 결과는 CESD-11의 계산 방식에 따라 전체 문항(11개)의 합계에 20/11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16점 이상은 우울 위험군에 속함.

□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사건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80~90% 가량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함. 그러나 청소년부모는 일반 청소년부모에 비해서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표 12. 응답자의 아동·청소년기의 경험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없다	있다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39 (38.6)	62 (61.4)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24 (82.9)	30 (17.1)
양육자의 체벌 및 정서적 공격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68 (67.3)	33 (32.7)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44 (95.0)	10 (5.0)

구 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정서적/정신적 어려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64 (63.4)	37 (36.6)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42 (94.6)	12 (5.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53 (52.5)	48 (47.5)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26 (84.4)	28 (15.6)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한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70 (69.3)	31 (30.7)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29 (84.5)	25 (15.5)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53 (52.5)	48 (47.5)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45 (95.3)	9 (4.7)
가출 경험	청소년부모	101 (100.0)	54 (53.5)	47 (46.5)
가정의 보호 경험 (양육시설, 쉼터, 위탁가정 등)	청소년부모	101 (100.0)	80 (79.2)	21 (20.8)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가출 경험과 가정 외 보호 경험 문항을 추가하였음.

□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에게 건강 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출산지원 정책이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특히 청소년부모는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서비스 정책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4.9%로 나타남.

표 13.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건강검진 지원 정책	심리지원 서비스 정책	생활 체육시설 확대 정책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출산 지원 정책	기타
청소년 부모	101 (100.0)	9 (8.9)	15 (14.9)	1 (1.0)	9 (8.9)	64 (63.4)	3 (3.0)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24 (15.6)	20 (13.5)	9 (4.1)	28 (18.5)	72 (47.8)	1 (0.5)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④ 경제 상황

□ 응답자 가구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맞벌이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

년부모 모두 외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부모의 경우 응답자와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지 않는 사례는 전체 응답자의 12.9%로 확인됨.

표 14. 맞벌이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맞벌이	외벌이	비해당
청소년부모	101 (100.0)	9 (8.9)	79 (78.2)	13 (12.9)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54 (34.9)	100 (65.1)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연령 특성을 감안하여 보기 항목에 비해당(응답자와 배우자 모두 돈을 벌고 있지 않음)을 추가하였음.

□ 지난 주에 일을 했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인 응답자의 고용 형태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53.3%)인 반면, 일반 청년부모는 응답자의 69.2%가 정규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현재 일자리의 고용 형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청소년부모	30 (100.0)	13 (43.3)	16 (53.3)	0 (0.0)	1 (3.3)	0 (0.0)
일반 청년부모	60 (100.0)	41 (69.2)	9 (13.8)	0 (0.0)	6 (8.2)	4 (8.9)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지난 주에 일을 했는지 질문했을 때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 근로시간 유형에서도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일반 청년부모의 경우 전일제 근로가 응답자의 80.8%를 차지하는 반면, 청소년부모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46.7%에 불과함.

표 16. 근로시간 유형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청소년부모	30 (100.0)	14 (46.7)	16 (53.3)
일반 청년부모	60 (100.0)	50 (80.8)	10 (19.2)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지난 주에 일을 했는지 질문했을 때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 응답자의 근로소득을 살펴본 결과청소년부모는 지난 달 기준 월급을 포함한 기타 수입까지 포함해도 평균 161.3만원으로, 일반 청년부모의 월평균 소득(198.6만원)에 비해서는 적었다.

표 17. 월 평균 근로소득

(단위: 만 원)

구 분	사례수	근로 소득(세후 월급)		지난 달 기준 총 소득(월급+기타수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부모	30	122.4	89.3	161.3	96.4
일반 청년부모	60	198.6	104.6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 이외에 지난 달 기준으로 월급과 기타 수입을 모두 포함한 총 소득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3) 지난 주에 일을 했는지 질문했을 때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을 선택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 지난 4주 내 구직 활동 여부에 대해 질문한 후, 직장이 구해졌어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을 이유로 든 경우가 많았음.

표 18.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진학 준비 중이어서	취업 준비 중이어서	기타
청소년부모	9 (100.0)	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반 청년부모	4 (100.0)	3 (72.6)	1 (27.4)	0 (0.0)	0 (0.0)	0 (0.0)	0 (0.0)	0 (0.0)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지난 주에 '일을 하지 않았음'을 선택하고,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사례만 분석한 결과임.

□ 응답자가 물질적 박탈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 문항 중 3개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부터이고, 4개 이상일 경우 물질적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 결과, 청소년부모는 응답자의 약 40%가 물질적 박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청소년부모는 물질적 박탈이 심각한 상태가 응답자의 29.7%로, 청소년부모가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물질적 박탈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9. 물질적 박탈 수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2개	3개	4개 이상
청소년부모	101 (100.0)	59 (58.4)	12 (11.9)	30 (29.7)
일반 청년부모	154 (100.0)	129 (83.2)	17 (11.7)	8 (5.1)

주: 1)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물질적 박탈은 총 9개의 문항('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등)로 구성되어있음. 응답자가 물질적 박탈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3개부터이며, 4개 이상일 경우 물질적 박탈이 심각함을 의미함.

⑤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각 상황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응답자의 사회적 지지체계 유무를 확인한 결과,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청소년부모가 도구적지지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음. 또한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지지체계 중 정서적 지지체계도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정보적 지지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30 (29.7)	71 (70.3)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33 (21.3)	121 (78.7)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47 (46.5)	54 (53.5)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57 (37.3)	97 (62.7)
도구적 지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46 (45.5)	55 (54.5)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13 (8.3)	141 (91.7)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35 (34.7)	66 (65.3)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9 (5.3)	145 (94.7)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64 (63.4)	37 (36.6)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52 (35.6)	102 (64.4)
정서적 지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37 (36.6)	64 (63.4)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11 (6.2)	143 (93.8)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청소년부모	101 (100.0)	14 (13.9)	87 (86.1)
		일반 청년부모	154.0 (100.0)	6 (2.9)	148 (97.1)

주: 일반 청년부모는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n=154)를 의미함.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청소년부모의 정책 인지, 이용 경험 및 욕구

① 주거 지원

□ 연구진이 제시한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응답자의 정책 이용 경험과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부모는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표 21.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이용 경험			도움 정도					
	사례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사례수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별로도움 되지 않음	보통	다소도움됨	매우 도움됨
주거 급여	58 (100.0)	33 (56.9)	25 (43.1)	25 (100.0)	0 (0.0)	1 (4.0)	3 (12.0)	4 (16.0)	17 (68.0)
정부 지원 전월세 자금 보증	37 (100.0)	33 (89.2)	4 (10.8)	4 (100.0)	0 (0.0)	1 (25.0)	0 (0.0)	0 (0.0)	3 (75.0)
공공 분양 주택	76 (100.0)	55 (72.4)	21 (27.6)	21 (100.0)	0 (0.0)	0 (0.0)	4 (19.0)	1 (4.8)	16 (76.2)
공공 임대 주택	69 (100.0)	48 (69.6)	21 (30.4)	21 (100.0)	0 (0.0)	1 (4.8)	3 (14.3)	3 (14.3)	14 (66.7)

주: 해당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임.

② 임신 및 출산 지원

□ 청소년부모에게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55.4%). 그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임신·출산 준비에 드는 비용과 물품 지원(13.9%)이었으며, 임신·출산 기간동안 지낼 수 있는 주거 지원(11.9%), 임신·출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원(10.9%) 순으로 나타남.

표 22.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임산출산 관련 긴급상담전화 (위기임산출산 상황에 필요한 지원 및 상담)	2	(2.0)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56	(55.4)
임산출산 준비에 드는 비용 및 물품 지원	14	(13.9)
임산출산 기간 동안 생활비 (출산관련 비용 및 진료비를 제외한 비용) 지원	11	(10.9)
임산출산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주거 지원	12	(11.9)
출산 후 필요한 산후조리 서비스 (도우미 지원 등)	5	(5.0)
임산출산 과정에서 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0	(0.0)
아이를 낳자마자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먹일 때, 씻길 때, 울 때, 응급 시 등)	1	(1.0)
기타	0	(0.0)

③ 학업 및 자립을 위한 교육

□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 중 학업을 중단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01명 중 32명이었으며, 이들 중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 기타(43.8%)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이유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21.9%)는 것이었음.

표 23. 학업 중단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32	(100.0)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7	(21.9)
임신 및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4	(12.5)
주변의 차별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	1	(3.1)
부모님(또는 길러주신 분)이나 가족의 권유 때문에	0	(0.0)
생활비(양육비)를 벌기 위해	4	(12.5)
학교의 징계와 강요 때문에	2	(6.3)
기타	14	(43.8)

④ 자녀 양육

□ 청소년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47%는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자녀의 양육비 또는 교육비 부담을 택함. 이어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17%, 아이나 생활태도를 지도하는 것이나 훈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은 9.0%였음.

표 24. 자녀 양육 시 힘든 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아이 양육비나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47	(47.0)
아이를 돌보거나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12	(12.0)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17	(17.0)
아이 생활태도 지도나 훈육이 어렵다	9	(9.0)
어린 부모의 자녀라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별·따돌림 받거나 적응을 못해 어렵다	1	(1.0)
아이에게 가족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	0	(0.0)
기타	2	(2.0)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12	(12.0)

□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들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정책 이용 경험과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 등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트 등과 같은 정책의 이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표 25.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필요 및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필요 여부			인지 여부		
	사례수	필요없음	필요함	사례수	모름	알고 있음
아동수당	101 (100.0)	1 (1.0)	100 (99.0)	101 (100.0)	10 (9.9)	91 (90.1)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101 (100.0)	20 (19.8)	81 (80.2)	101 (100.0)	41 (40.6)	60 (59.4)
가정양육수당	101 (100.0)	3 (3.0)	98 (97.0)	101 (100.0)	29 (28.7)	72 (71.3)
영아수당	101 (100.0)	3 (3.0)	98 (97.0)	101 (100.0)	19 (18.8)	82 (81.2)
보육료 지원	101 (100.0)	4 (4.0)	97 (96.0)	101 (100.0)	29 (28.7)	72 (71.3)
유아학비 지원	101 (100.0)	8 (7.9)	93 (92.1)	101 (100.0)	52 (51.5)	49 (48.5)
아이돌봄서비스	101 (100.0)	9 (8.9)	92 (91.1)	101 (100.0)	46 (45.5)	55 (54.5)
공동육아나눔터	101 (100.0)	12 (11.9)	89 (88.1)	101 (100.0)	71 (70.3)	30 (29.7)
드림스타트	101 (100.0)	11 (10.9)	90 (89.1)	101 (100.0)	75 (74.3)	26 (25.7)

⑤ 청소년부모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 청소년부모에게 첫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과, 자립을 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을 물었을 때, 도움을 받은 기관이 없었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청소년부모 카페나 지역 맘카페 등의 인터넷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음.

표 26. 청소년부모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단위: 명, %)

구 분	첫 자녀 임신출산		첫 자녀 양육		자립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101	(100.0)	101	(100.0)
구청/주민센터	15	(14.9)	13	(12.9)	10	(9.9)
지역복지시설	0	(0.0)	1	(1.0)	2	(2.0)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	(0.0)	0	(0.0)	2	(2.0)
모부자 관련 시설 (미혼모자시설, 청소년부모지원기관 등 민간 지원 기관)	15	(14.9)	12	(11.9)	11	(10.9)
건강가정지원센터	1	(1.0)	2	(2.0)	0	(0.0)
드림스타트	0	(0.0)	0	(0.0)	1	(1.0)
보건소	5	(5.0)	5	(5.0)	1	(1.0)
학교	0	(0.0)	1	(1.0)	0	(0.0)
인터넷(청소년부모 카페, 맘카페 등)	29	(28.7)	26	(25.7)	11	(10.9)
기타	2	(2.0)	6	(5.9)	2	(2.0)
도움 받는 기관이 없다	34	(33.7)	35	(34.7)	61	(60.4)

⑥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및 서비스

- 청소년부모에게 청소년부모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질문한 결과,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꼽았음(전체 응답자의 31.7%). 또한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26.7%,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은 19.8%,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18.8% 순으로 나타남.

표 27.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	19	(18.8)
지원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	27	(26.7)
지원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20	(19.8)
국가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기 어렵다	32	(31.7)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을 느낀다	2	(2.0)
기타	1	(1.0)

-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근무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자립수당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각각 전체 응답자의 2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주택 또는 주거비 지원 등)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0.8%로 나타남.

표 28. 청소년부모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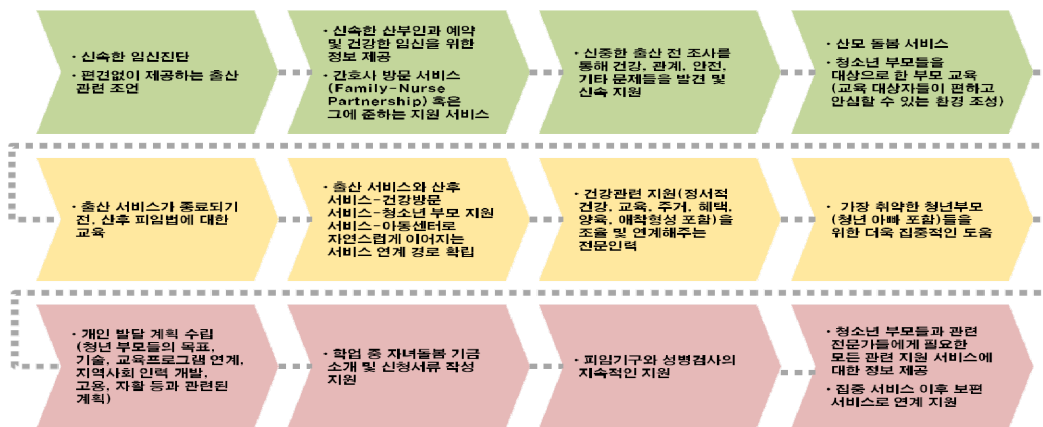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1	(100.0)
학력을 갓출 수 있도록 지원	5	(5.0)
다양한 직업 훈련 교육과정(프로그램) 제공	5	(5.0)
근무 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확대	23	(22.8)
교육, 훈련, 일자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2	(2.0)
학업이나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 및 서비스	19	(18.8)
학업이나 취업과정, 일하는 곳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환경 조성	3	(3.0)
자립수당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의 확대	23	(22.8)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주택 또는 주거비 지원 등)	21	(20.8)
기타	0	(0.0)

3. 청소년부모의 정책지원 과제

1) 청소년부모 정책 지원 방향과 추진과제

(1) 청소년부모 발굴지원 체계 마련

□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와 함께 조기 임신 및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 참고).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가 가진 경제·주거지원, 심리지원, 자녀 돌봄 지원 등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임신·출산, 산모·아동, 양육·자립, 통합적 서비스 제공

– 구체적 지원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자원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족간호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가 방문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부모와 자녀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출처: 1) Public Health England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18.
2) 배보은.(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그림 2. 청소년부모를 위한 통합 지원 경로

□ 현재 운영되는 체계 안에서 청소년부모 대상의 전국적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4월 기준 전국 30개 지역 보건소로 확대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더불어 이를 시군구의 취약 아동·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영국에서는 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신청주의에 기반, 일반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부모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 이에 따라 청소년부모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아니더라도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 개편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국민행복카드 혹은 보건소 산모 등록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산모가 24세 이하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할 경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즉각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청소년부모를 특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집중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또한 자녀가 2세 이상이 되면 필요시 지역의 드림스타트 혹은 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통해 아동과 부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2) 청소년부모 특성 반영, 지원제도 개선

① 주거, 경제 지원 제도

- 주거 및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부모를 특수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결과 청소년부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경우가 다수였음. LH와 같은 정부지원주택에 입주하여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고 싶어도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가구 소득으로 포함되어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웠으며,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청소년부모의 주거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을 분리된 세대로 인정하여 자산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목돈의 보증금 납부에 대한 대안, 소득 기준 현실화 등이 필요함.

② 교육, 훈련, 취업지원 제도

- 청소년부모가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함.
 - 청소년부모는 일반청년에 비해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학력 수준도 고졸 이하 비율이 대학 이상보다 매우 높았음. 또한 학업을 중단한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자녀 돌봄의 문제였음.
 - 아동돌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등에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과 인력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③ 보육, 돌봄 지원제도

- 청소년부모가 교육·훈련·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가구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는 청소년부모가 포함되어있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른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맞벌이 가구,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며 소득(수급·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우선 제공 대상임.
 - 청소년부모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학업과 취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학업과 취업 자체가 연기되는 것이 다반사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필요한 시기에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학업과 취업, 직업훈련 등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스스로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루어야 청소년부모가구가 빈곤·취약가구로 이행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청소년부모가 자립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 보호, 돌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 정의 및 지원

-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 정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 포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부모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며 이미 '자립'을 이루어가고 있는 초기 청년임.
 - 연구 결과,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의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관련 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청소년부모 스스로도 그들을 '청소년'부모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청소년'부모로 지칭하여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냄.
 - 실제 2020년을 기준으로 청소년부모 2,298가구 중에서 부모 모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 부모가구(38가구)는 2% 미만,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경우(212가구)도 전체의 9%에 불과함. 초기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 명명함으로써 부정적 인식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임.

표 29. 청소년부모 현황(2020년 출생자 기준)

(단위: 가구)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가구	부 또는 모 19세 미만인 가구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부 또는 모 24세 이하인 가구
38	174	2,298	10,526

* 자료: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 청년정책대상에서 포괄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닌 청년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함.
 - 청년연령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한부모, 청년한부모, 청년·청소년부모, 청

년부모 가구 모두에게 사각지대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들 가운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2) 취약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우선 지원과 정보 접근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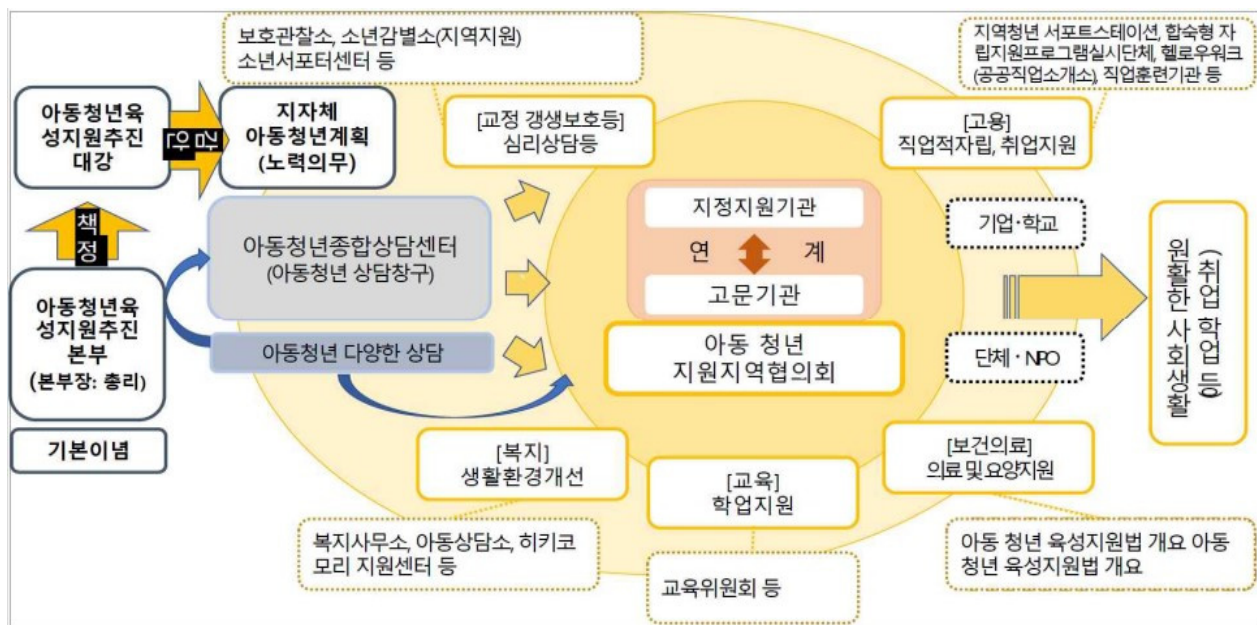
-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1인 가구 중심으로 청소년부모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청소년부모를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특별 지원 대상으로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청소년부모가 부모와 함께 거주시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인해 정부지원 주택 등의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택 공급 정책 내 청소년부모를 우선 특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득 기준 완화 및 부모가구와 자산 조사 분리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고용·취업 컨설팅, 청년교육비 지원, 저금리 대출 서비스 등 청소년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표 30. 청년정책기본계획(일부)

구 분	주요 내용
고용복지서비스망 구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형고용센터·출장소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컨설팅 강화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 진로설계 진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합, 내실 제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특화주택 공급,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정기준 확대, 기준임대로 현실화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소득 기준 완화,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주택코디네이터 등 종합지원
국가장학금	기초·차상위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후학습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저소득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수급자, 차상위 대상
청년햇살론	미취업, 저신용 청년 저금리상품
채무조정특례	특례지원, 상환유예기간 확대
청년정신건강특화사업(바우처)	우울증검사, 정신 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
모든청년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	20·30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까지 확대('19~)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24세 미만 또는 대학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근로인센티브 제공
문화누리카드	기초·차상위대상 연간 10만원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청소년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대상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체계(보건소,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별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부모 발굴 및 지원, 정보제공 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임.
- 현재 청소년부모 대상의 정책 및 서비스는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식적 지원체계가 없는 많은 청소년부모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들 중 일부만이 온라인 자조 모임이나 민간단체를 통해 제한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임.
-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과 교육, 청소년부모 당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부모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보건소,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협업이 용이하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일반 청년대상 지원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 청년센터의 역할은 일본의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사례를 참고해볼 만함(〈그림3〉 참고).
 - 아동청년종합센터의 주요한 기능은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다른 창구로 연계되지 않도록 원스톱 상담 창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임. 이에 따라 상담을 통해 개별 청년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 소개와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음(정세정 외, 2020).



* 출처: 1) 厚生労働省. (2010. 4.1.).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에서 2020. 9. 15. 인출.
2)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29의 [그림 3-2-1] 재인용.

그림 3. 일본의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연계 흐름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주제발표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실태와 정책과제

박광옥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발제¹⁾

박광옥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며, 선언적 조항으로 구속력이 없음
- 경계선지능청년은 기본적으로 청년기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및 제도별 기준 자격이 충족된다면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 청년정책에서는 앞서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특화되거나 개별화된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즉 경계선지능청년의 상황을 고려한 공식적인 정책과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합의된 개념과 공식적인 진단체계가 없고, 경계선지능인이 정책대상자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연결됨. 최근 들어서야 지자체 조례에 기초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지원센터와 몇 곳의 지역사회 복지관 등에서 공동모금회 등의 예산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청년 자립을 위한 단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외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비함. 이마저도 수도권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비하거나 부재한 상황임. 경계선지능인은 어떠한 지원 없이 학령기 때 겪은 어려움이 청년기 진입하면서 문제가 심화되거나 청년기 과업을 이행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가중되고 있음. 시급하게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분석 국가로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 5개국을 조사하였는데, 국가별로 경계선지능의 진단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국외 경계선지능인 진단기준 및 지원방법

구분	진단기준	지원방법
네덜란드	DSM-5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지적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미국	DSM-5	경계선지능으로 인해 근로나 기초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서비스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벨기에	AAIDD	자폐범주성장애 등의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의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에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직업 및 취업 훈련을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을 제공함
캐나다	AAIDD	자폐범주성장애 등의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의 어려움을 함께 보이는 경우에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스페인	DSM-5	구체적인 정책은 부재하나, 경계선지능 고유의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

1) 본 자료는 "청년종합연구1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의 세부보고서 '박광옥,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양해만, 김상희, 송기호.(202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료의 인용은 보고서의 원문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경계선지능의 진단기준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 정의한 AAIDD,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들 수 있음. 각 정의의 세부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평균 이하의 지적기능과 적응행동능력, 그리고 발달단계에 발생한다는 것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음. 분석을 통해 살펴본 국외 사례 또한 경계선지능 진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의가 상이함
- 네덜란드는 경계선지능인을 모든 사회적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로 나타남. 네덜란드에서는 경계선지능을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다양한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경계선지능인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요구를 탐색하여 그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은 최근까지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 사회보장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경계선지능인에게 근로 또는 기초생활지원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경계선지능으로 사회보장서비스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인 개인이 정보이해 또는 사용능력, 자기관리능력, 집중 및 유지능력, 상호작용능력 중 하나의 영역에서 심각한 제한을 가지거나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벨기에는 지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로 진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그러나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이 아닌 지적장애 진단이나 다른 장애의 진단이 필요하기에 경계선지능으로 인한 직접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흥미로운 것은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벨기에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직업과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을 포함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캐나다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경계선지능인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음.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지원은 향후 이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취약성을 조기에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찾을 수 없었으나,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음.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경계선지능 조기선별 및 진단 개선방안, 개별화 중재 계획, 사회통합 촉진: 고용가능성, 부서 간 또는 학제 간의 협력의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지원은 건강, 교육, 고용,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결과

1) 조사개요

○ 본 연구에서 진행된 조사 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개요

구분	조사개요	참여자 일반적 특성
서베이	- 대상: 만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청년* (총 분석대상 203명) * 지능지수가 71에서 84에 해당되는 자(이하 동일) - 방법: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양육)하고 있는 종사자(부모)가 직접 청년과 대면하여 온라인조사지를 활용하여 조사 - 내용: 전반적인 삶 영역*의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파악 *가구형태 및 주거, 교육 및 훈련, 건강, 일상생활 및 만족도, 소득 및 경제활동, 결혼 및 가족관계, 관계 및 참여, 인권 및 사법, 정책 및 지원 등 9개 영역	- 총 203명의 참여자 중 : 성별의 경우 남성 51.2%(104명), 여성 48.8%(99명), 연령대의 경우 24세 이하 62.6%(127명), 25-29세 29.5%(60명), 30세 이상 7.9%(16명), 보호기반의 경우 가정보호 69.5%(141명), 시설보호(종료) 30.5%(62명)
심층면접	- 대상: 만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청년 총 6명 - 방법: 담당 연구진이 1:1 대면 조사 수행 - 내용: 서베이 9개 영역의 주요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한 심층조사	- 총 6명의 참여자 중 : 성별의 경우 남성 3명, 여성 3명, 연령대의 경우 24세 이하 4명, 25-29세 2명, 가정보호청년 4명, 시설보호(종료)청년 2명
초점집단면접	- 대상: 만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6명) 및 부모(6명) - 방법: 대면, 비대면 혼합 조사 수행 - 내용: 서베이 9개 영역의 주요 생활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한 심층조사	- 총 6명의 종사자 중 : 성별의 경우 남성 1명, 여성 4명, 기관 유형은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2명, 지역복지관 2명, 경계선지능인관련 민간단체 및 협동조합 2명 - 총 6명의 부모 중 : 모든 참여자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경계선지능청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 대상

2) 조사결과

(1) 서베이(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 조사)

○ 경계선지능청년의 결과를 유사 정책대상자인 일반청년과 발달장애청년의 관련 조사 결과²⁾와 비교하여 각 대상자의 실태 격차를 살펴봄.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조사 지표를 고려하여 모든 대상 또는 특정 대상의 값을 비교하여 제시함

① 주거

○ 실태조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 중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원룸’, ‘고시원’ 등의 다소 협소하고 향후 이주가 필요할 수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41.9%)이 높게 나타남. 이는 일반청년(총 15.8%, 원

2) 비교자료는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경계선지능청년의 조사대상 연령인 19세부터 34세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총 사례 수는 1940명이며,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에서 사용한 총 사례 수는 1,519사례임.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비교를 시도했지만 조사 연도와 규모가 상이하여 일반화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룸: 15.7%, 고시원: 0.1%)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경계선지능청년 중 시설보호(종료) 청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계선지능청년의 주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표 3.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현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203	100.0	62	100.0	835	100.0
원룸(다가구)	25	12.3	23	37.1	131	15.7
아파트	96	47.3	5	8.1	362	43.4
단독주택	14	6.9	-	-	77	9.2
다세대/빌라	36	17.7	8	12.9	210	25.1
고시원	4	2.0	3	4.8	1	0.1
오피스텔	6	3.0	4	6.5	46	5.5
기숙사	1	0.4	1	1.6	2	0.3
시설	16	7.9	15	24.2	-	
기타	5	2.5	3	4.8	6	0.7

② 전장

○ 실태조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의 54.7%가 일상에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반청년(24.8%)과 발달장애청년(26.7%)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매우 우울함’의 비율이 경계선지능청년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상에서 심리·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경계선지능청년: 5.9%, 일반청년: 1.3%, 발달장애청년: 4.4%).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도 27.6%로 나타남. 이는 202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1분기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일반 국민의 자살생각 비율(전체: 16.3%, 20-30대: 22.5%)보다 높은 수치임

표 4.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우울감 수준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¹		일반청년 ¹		발달장애청년 ²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203	100.0	1,636	100.0	1,519	100.0
전혀 또는 매우 드물게 우울함	92	45.3	1,231	75.2	1,109	73.3
다소 우울함	99	48.8	383	23.5	337	22.3
매우 우울함	12	5.9	22	1.3	67	4.4

주¹. 경계선지능청년 생활실태 및 지원욕구 조사,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지난 1주간 우울감을 느낀 수준’ 문항의 ‘가끔 그러함’, ‘종종 그러함’의 변수를 ‘다소 우울함’의 변수로 합침

주².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G5)’에서 모름/무응답(0.4%, 6명)을 제외한 비율을 제시함

- 외출 수준과 관련해서 경계선지능청년 중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비율은 8.6%(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5.6%,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3.0%)로 나타남. 이는 일반청년(0.2%)에 비해 약 8배 이상 높은 수치임. 이와 같이 심각한 고립 상황에 놓여있거나 예상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발굴하는 동시에 경계선지능청년의 사회참여와 정신건강 지원 등이 시급함

표 5.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평상 시 외출 수준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97	100.0	2,041	100.0
매일 또는 주 3-4일 외출함	135	68.5	1,940	95.1
취미생활, 생활물품을 구입할 때만 인근지역에 외출함	45	22.8	95	4.7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11	5.6	6	0.2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6	3.0	-	-

③ 일상생활

-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의 77.4%(모든 부분에 도움이 필요함: 7.4%)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청년(76.9%, 대부분의 일과 시간에 도움이 필요함 18.7%)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표 6. (경계선지능청년 vs 발달장애청년) 타인의 도움 필요 수준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발달장애청년 ¹	
	전체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203	100.0	62	100.0	1,519	100.0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모든 부분+일부분)	157	77.4	50	80.6	1,169	76.9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46	22.7	12	19.4	351	23.1

주¹.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 '도움 필요 시간(G6)' 항목을 도움 필요시간 유무에 따라 변수를 변경함

- 필요 도움 내용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신변자립 등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청년과 다르게 '각종 계약 체결' 15.9%, '금융 거래 및 금전 관리'(15.0%), '필요 행정서류 발급 및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이용'(12.8%),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12.5%) 등 대부분 성인기 지역사회 자립 기능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계선지능인 개인이 생애주기별 과업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사례관리 및 평생교육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④ 고용

- 경계선지능청년 응답자의 53.3%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음. 이는 발달장애청년(39.2%) 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일반청년(65.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전술하였듯이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일반청년과 경쟁해야 하는 취업 진입 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실제 경계선지능청년은 구직활동 시 ‘자기관리, 사회적응 등의 나의 취업 준비가 부족함’(22.0%), ‘나를 채용하려는 일자리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20.9%),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에서 자주 탈락함’(17.6%),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13.2%)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함
- 취업이 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63.1%로 일반청년(25.4%)과 발달장애청년(52.4%)보다 높게 나타남. 월 소득도 전체적으로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응답자의 78.1%(이 중 ‘100만원 미만’ 37.5%)로 나타나 근로 소득이 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취업 직종의 경우에도 ‘서비스 종사자’(43.8%), ‘단순 노무 종사자’(34.4%) 등에 집중되고 있어 한정된 직종으로 취업 진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출퇴근의 어려움’(22.2%),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22.2), ‘대인관계의 어려움’(18.5%), ‘업무자체가 힘들고 어려움’(18.5%)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발달장애청년이 직장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직장 내 적응과 근로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실제 경계선지능청년들은 취업 진입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고용 지원(48.4%: 진로 및 훈련 37.8%, 고용: 10.6%)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7.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취업관련 현황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발달장애청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현재 취업 여부	계	137	100.0	2,041	100.0	1,519	100.0
	일하고 있음	73	53.3	1,331	65.2	596	39.2
	일하고 있지 않음	64	46.7	710	34.8	923	60.8
고용 형태	계	65	100.0	1,186	100.0	584	100.0
	정규직	24	36.9	885	74.6	278	47.6
	비정규직	41	63.1	301	25.4	306	52.4
직장 생활 어려움	계	54	100.0			243	100.0
	출퇴근의 어려움	12	22.2			54	22.2
	근태관리의 어려움	3	5.6			9	3.7
	자기관리의 어려움	-	-			9	3.7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8	14.8			9	3.7
	근로능력의 부족, 업무 성과 미흡	12	22.2			18	7.4
	근로조건의 문제	-	-			45	18.5
	근무환경의 열악함	5	9.3			15	6.2
	대인관계의 어려움	10	18.5			63	25.9
	도와줄 사람이 없음	-	-			4	1.6
	기타	4	7.4			17	7.0

주1. 발달장애인 일과 삶 조사 '현 직장 어려움(D41)'에서 소수 응답수를 '기타'변수로 변경함

⑤ 사회참여

-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과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의 19.8%가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이라고 응답함. 특히 시설보호(종료)청년의 경우에는 37.1%로 나타나 소속감을 느낄 정도의 관계망 형성이 매우 원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이 비율은 일반청년(18.8%)보다 높게 나타남.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의 경우 경계선지능청년의 60.8%가 ‘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청년은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35.2%), ‘소속 직장의 직업 모임’(25.0%) 등이 높은 비율을 보임. 이 결과를 통해 경계선지능청년은 가족 외 사회 참여에 의한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가 있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청년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와 관계망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8.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전체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	39	19.8	16	11.9	23	37.1	383	18.8
계	197	100.0	135	100.0	62	100.0	2,342	100.0
나의 가족	96	60.8	83	69.7	13	33.3	-	-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13	8.2	5	4.2	8	20.5	824	35.2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12	7.6	7	5.9	5	12.8	238	10.2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13	8.2	8	6.7	5	12.8	275	11.7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14	8.9	8	6.7	6	15.4	586	25.0
온라인 커뮤니티	5	3.2	4	3.4	1	2.6	419	17.9
기타	5	3.2	4	3.4	1	2.6	-	-

⑥ 인권 및 사법

- 경계선지능청년이 최근 2년 이내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전체 비율은 14.8%로 일반청년(3.7%)과 발달장애청년(일상: 8.2%, 직장: 6.9%)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경계선지능청년이 일상에서 인권침해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음. 괴롭힘의 내용은 ‘정서적 괴롭힘’(38.4%), ‘경제적 착취’(14.3%)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주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있음’(37.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20.7%),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음’,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함’(각각 13.8%) 등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51.7%)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인권침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방안(예: 정서적 괴롭힘: 옹호인 매칭 등. 경제적 착취: 신탁, 자산관리지원 등)과 전문적인 권리구제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험 비율(전체: 6.1%, 가정보호 청년: 4.5%, 시설보호(종료) 청년: 9.7%)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타인에 의해 연루되고 있어 또 다른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조사과정의 적절한 진술조력과 사법지원 등이 필요함

표 9.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타인의 괴롭힘 피해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¹		발달장애청년			
					일상 괴롭힘		직장 괴롭힘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96	100.0	1,122	100.0	1,519	100.0	596	100.0
있음	29	14.8	42	3.7	125	8.2	41	6.9
없음	167	85.2	1,080	96.3	1,394	91.8	555	93.1

주¹. 일반청년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한정된 비율임

⑦ 정책지원

- 필요 지원을 살펴보면, 경계선지능청년은 ‘고용지원’(48.4%), ‘소득지원’(16.5%), ‘주거지원’(11.2%)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일반청년은 ‘고용지원’(40.6%), ‘주거지원’(15.2%), ‘소득지원’(11.4%), 발달장애청년은 ‘소득지원’(45.6%), ‘고용지원’(19.1%), ‘일상생활지원(돌봄)’(15.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전체적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은 타 대상자에 비해 고용지원의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표 10. (경계선지능청년 vs 일반청년vs발달장애청년) 필요 정책 지원(3순위)

(단위 : 명, %)

구분	경계선지능청년		일반청년		발달장애청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사례수	빈도
계	188	100.0	2,041	100.0	1,519	100
소득지원	31	16.5	232	11.4	693	45.6
고용지원	91	48.4	828	40.6	290	19.1
일상생활지원(돌봄)	-	-	-	-	234	15.4
주거지원	21	11.2	311	15.2	-	-

- 동시에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경계선지능청년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 인지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 28.9%이었으며, 특히 가정보호 청년(평균 23.0%)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용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 27.5%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매우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인 어려움으로 ‘어떠한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지 모름’(42.9%), ‘어떻게(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19.6%),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모름’(12.5%) 등이 제시됨. 따라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심층면접

○ 경계선 지능 청년의 생의 경험은 돌봄과 가족 경험, 경계선 지능의 확인과 실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와 학업, 그 안에서의 관계, 명확히 경계선 지능임을 인식하게 된 계기와 그와 관련한 경험, 일 경험, 살아오면서 받았던 도움의 경험과 미래설계 및 지원욕구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함

표 11. 심층면접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돌봄 및 가족 경험 : 깊은 뿌리, 넓은 그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울타리	- 가정,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공간과 관계 - 소수의 할 수 있는 일, 대다수는 도움이 필요한 일에 대한 일상화된 도움 - 자녀의 한계를 알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부모
	적절한 돌봄 체계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울타리	- 부모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임을 너무 늦게 파악함 -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응해주지 못함 - 가족 내 문제의 가중으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함 - 가족의 헌신으로 야기되는 자괴감
	시설, 자립지원의 테스트 베드	- 가족보다 든든한 '보호' 처분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 강력한 유대에 기반을 둔 울타리 - 다양한 경험의 제공처
삶의 사태로서의 학교·학업·관계경험 : 악몽과 미몽 사이	유일하고 절대 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도그마	-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공간 - 모호한 기준으로 현실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함 - 불확실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처와 미래설계에 혼란을 겪음 - 졸업, 고립과 은둔의 시작
	공부에는 실패했으나 '중간은 가는 나'라는 자기평가를 형성	- 기본이 안 되어 있으나 소수의 영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음 - 모든 것이 성적으로 환산되는 시간 - 코피를 쏟아도 좁혀지지 않는 격차 인식
	다수의 부정적 경험과 소수의 긍정적 경험의 충돌	- 어쩔 수 없는 공부, 관리 가능한 외모와 관계에 집착 - 감치거나 나대는 아이라는 평판 형성
	자기합리화 혹은 혼란, 애착형 관계 형성	- 능력 부족이 아닌 적성의 문제로 인식 -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을 '한창 싸움할 나이'로 합리화 - 축적된 부정적 평가, 단지 '생기부에 기록된 나'일 뿐
경계선 지능 인식 : 준장애인이라는 판정패	평가와 평판이 엇갈리는 혼란 경험	- 관심 있는 것은 우수, 관심 없는 것은 중간 이하, 나름의 성공 경험 - 과정평가나 성장 중심 평가로 인해 객관적인 능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열심히 하지 않았을 뿐, 적성에 맞지 않았을 뿐
	자기 한계 인식과 부정	- 언제나 제자리인 나, 멀어지다 고립되는 관계 - 공부 체질이 아닐 뿐,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일 뿐, 성적은 종이로 남은 결과지에 불과할 뿐 -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사람, 코칭이 부족한 사람일 뿐
	피해갈 수 없는 길, 피할 수 있었어도 좋았을 길	- 막다른 길에서 만난 판정, 생소함과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사이 - 확인 사실당하는 심정 - 생애의 퍼즐 조각이 맞춰짐 - 몰라도 좋았을 일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일 경험 : 나도 밤나무, 나도 호모 라보르	‘일머리’와 ‘눈치 없음’으로 점철된 평가	- 기대되는 능력 중 미미한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능력 - 한없이 무력해지는 복잡한 일 - 모든 순간, 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시달림
	내몰리는 ‘자립’, 선의와 호의로 포장된 간섭과 권리 침해	- 기대할 수 없는 지원과 내몰린 자립 - 동료의 얼굴로 가해지는 간섭과 따돌림 - 가족 혹은 가족 같으며 패싱 당하는 권리 - 언제 어디서나 마주치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불편한 공간
	‘불안완화제’로서의 경제활동	- 경제적 압박과 불안이 주는 내몰린 동력 - 돈벌이의 즐거움 - 알바 아닌 월급제라는 소소한 자부심 경험
	새로운 경험과 관계 확장의 기회로서의 삶 자리	- 가슴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일을 통한 관계와 기회의 확장 - 꿈, 해방이자 구속
필요한 도움 : 유대와 연대를 통해 경계에 다리 놓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도움’ 경험	- 부모의 도움, 커가는 자괴감 - 도움의 대가, 노출과 유출 - 둔감하고 말 뿐인 도움, 놓쳐버린 골든타임 - 정서적 유대에 기반을 둔 ‘도움’ 아닌 보완의 경험과 지원의 원심력 경험
	미래설계, 단순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	- 멀고 큰 것에 대한 난감함, 무얼 원하는지 잘 모름 - 견디기 힘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삶 - 나의 강점과 자부심이 일이 되는 삶
	여전히 필요한 도움, 안전하게 시행착오 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내 안의 오타쿠를 찾아 주길 바래 - 천천히 반보 뒤에서의 도움을 바래 -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해주길 바래

○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계선지능 정의와 진단과 관련하여 유연한 판정이나 공식화된 판정결과를 강제하는 서비스 자격심사 등을 최소화, 경계선 지능은 정태가 아닌 동태적인 상태로 개념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던 개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식화된 경계선 지능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 등 일차안전망 단위에서의 경계선 지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행동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공통적 특성과 개별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범죄피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성)착취적 관계에 노출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범죄 피해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3) 초점집단면접

○ 경계선지능청년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4개 대주제와 12개 하위주제가 도출됨

표 12.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대 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경계선 지능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	- 어린시절부터 축적된 대인관계 트라우마 - 지속된 실패로 새로운 관계맺기 두려움
	암담한 미래준비	- 밑도 끝도 없는 미래 계획 - 당사자의 비주도성, 비자발성
	사각지대에 위치한 존재	-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 장애인도 아닌 비장애인도 아닌
지원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공식적 지원 부재	- 경계선지능에 대한 낮은 이해와 무관심 - 공식적 지원 체계 없음
	동기와 지속성 부족	- 경계선지능인들의 동기 부족 - 지속적인 지원 어려움
	환경에 따른 편차	- 쉼터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 가중 - 가족의 이해 및 지원에 따른 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	심리정서적 지지와 지원	- 학습된 무기력과 쉽게 꺾임 - 낮은 자존감, 회복되지 않은 상흔
	경계선 지능인 개념 정립	-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전제 요건
	가족 지원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도 필요
경계선지능인 제도 개선 방안	별도의 지원체계	-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지원 제도 - 경계선지능인의 특성 반영
	맞춤형 지원	- 장기적, 체계적, 연속선상의 지원
	자립 위한 고용 필수	- 자립 수준의 고용과 경제적 지원 - 경계선지능인의 적합한 직무개발

○ 경계선지능인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4개 대주제와 15개 하위주제가 도출됨

표 13. 부모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대 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일상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자녀 차원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높은 긴장과 불안
		미래를 꿈꾸기 어려움
	가족 차원	이해와 소통의 제약
		자립에 대한 우려
		상존하는 갈등
사회적 지원요구	자립 목적의 고용 지원	- 자립에 필수적인 직업훈련 - 느린 학습자에 맞는 직업교육
	사회적 관계 지원	- 소통할 수 있는 지인 만들기
	심리 정서적 지원	- 소외되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경험들 - 위축되고 자신 없는 마음상태

대 주제	하위주제	핵심 내용
발달장애 제도 편입	발달장애 등록 시도	- 마음은 절실하나 발달장애는 아님
	고용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기대	- 필요하고, 바라는 직업교육 - 발달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절실
경계선 지능인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 경계선지능인을 이해하는 사회
	전담 지원기관	- 필요할 때 지원 가능한 기관
	부모 지원	- 부모들을 위한 지원도 병행
	취업 기반 마련	- 최고의 지원은 취업

○ 경계선지능청년의 부모와 지원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초점집단면접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계선지능청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제공되어야 함
- 셋째, 경계선지능청년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성에 부합한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청년기 경계선지능인의 미래를 위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려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사회적 지원이나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인식부족이 여전하다면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는 교육이나 훈련 등의 기회가 제공되고 제반 지원이 병행된다면 경계선지능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논할 수 있음
- 다섯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도 매우 절실한 상황임. 가족구성원 간에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원함과 갈등관계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임. 가족을 위한 세부지원을 모색할 때에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 연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전반적으로 일반청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함. 하지만 몇 가지 차별화된 삶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정책지원이 필요함. 현재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 71-84로 정의되고, 실천 현장 및 일부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고 있으나 합의된 법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지능지수로만 경계선지능을 개념화하고 있어 지능 외에 고려해야 할 심리정서, 대인관계, 사회성 등 청년의 복합적 양상을 고려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본격적인 정책 지원에 앞서 경계선지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심리적으로 접근 용이한 서비스 진입 창구와 지원체계가 필요함. 연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복지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이용할 서비스가 전무하다보니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함. 또는 장애인등록을 할 의사는 없지만 자신에게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있다면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를 나타냄. 현 상황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접근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생애주기별 물리적,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와 보편적 서비스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계선지능청년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갈 수 있고, 또는 생활하는 주된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일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용에 있어 경계선지능청년의 심리적 장벽이 클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경계선지능청년 중에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 서비스 진입과 이용의 장벽은 낮추되, 개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생애주기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은 경계선지능 등으로 인해 생애주기 과업 수행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함. 또한 영유아기 또는 학령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돌봄과 지원 상황에 있었는지에 따라 청년기 생활수준이 다르게 나타남. 개인별로 필요한 지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생애주기별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 생애주기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연령별 지원이 상호 연계된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야 함
- 넷째, 개별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경계선지능청년은 청년별로 청년기 생애과업을 수행하는 수준과 어려움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 어떠한 청년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유사한 생활 방식과 정책 필요 수준을 보이거나 어떠한 청년은 일반청년과 매우 유사하게 별도의 특화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함. 이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의 특성과 생활수준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삶의 스펙트럼을 나타냄. 이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 각각의 삶의 어려움과 정책 필요 수준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기존 청년과 발달장애인 정책 및 지원서비스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있다면 서비스 진입을 위해 해당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제도 재설계 및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 다섯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고려한 촘촘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보호기반(가정, 시설보호)에 따라 어려움의 수준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특히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청년기 주거, 소득 및 경제생활, 정신 건강, 인권 침해 등 여러 방면에서 가정보호 청년보다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자립준비 이후 지지 기반이 부재하거나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었음. 정책 지원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청년 중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년의 생활 실태와

지원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또 다른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종료) 경계선지능청년의 보다 큰 취약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들이 지역 전환 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설보호 또는 자립준비 시기 관련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자립준비 이후 연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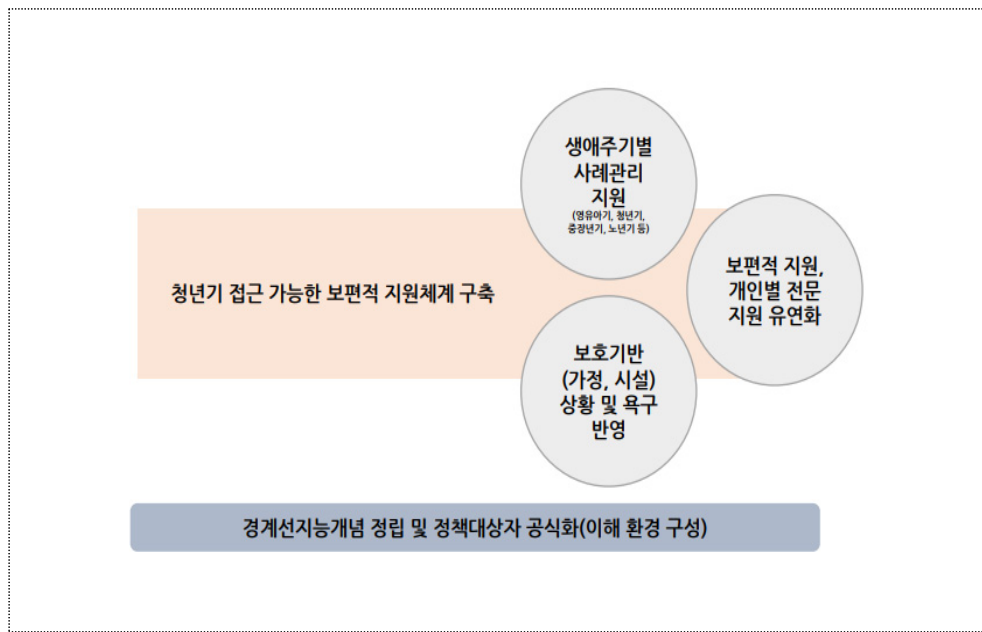


그림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과제

○이러한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경계선지능청년 개념 정립

○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기존 지능 중심의 단편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성, 정신건강 등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복합적 개념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본격적인 정책지원에 앞서 또는 동시에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 확립을 위한 과업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경계선지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논의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후 공식적인 진단체계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에 대한 홍보 및 진단 검사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술하였듯이 경계선지능청년은 개별 청년에 따라 청년 시기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또는 조금 더 차별화된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함. 개별 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삶의 전 영역에서 개인별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자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 확립에 따라 정책지원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안은「청년기본법」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에서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또는 반드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청년 지원에 대해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정책지원과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경계선지능청년 개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생애주기별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에 따른 산발적인 법적 근거보다는 진단에서부터 생애주기별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표 14.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구분	주요 내용
1안 청년기본법개정	- 「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명시,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 진행 필요 -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
2안 경계선지능인지원법(가칭) 제정	- 독립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경계선지능청년이 타 지원영역 및 제도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및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세부 정책 및 지원서비스를 마련할 때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을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이 때 관련 제도의 중립적 예산 내에서 기존 정책대상자의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진입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의 개별화되고 다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고용정책 및 제도를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15. 기존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예시)

구분	관련 법률	개정 사항
고용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 동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관리규제 및 사법 지원 : 진술조력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수사과정 참여)

(3) 세부 정책 및 지원서비스 확충

○ 기본적으로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은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되, 동시에 국가 주도의 삶의 영역별 필요한 정책 및 지원서비스를 개발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의 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 방식과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독립된 제도를 신설하는 방식을 고려함. 먼저 지원 영역별로 정책대상자 확대 및 제도 재설계 방식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표 16. 경계선지능청년의 주요 지원 욕구

필요지원	가정보호	시설보호(종료)
생애주기별 일상지원(사례관리)	일상생활 및 생애주기별 과업수행을 위한 개별 지원, 위기 청년 긴급 지원	
평생교육지원	진로 및 자립준비를 위한 성인기 지속학습 필요	
고용지원	직업 준비(체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및 유지를 위한 다각적 개별 지원	
주거지원	주택 확보 및 환경 개선, 주거 전환 등에 필요한 지원	
관계망지원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옹호 및 지지 관계망 형성 지원	
정신건강지원	은둔형(고립) 청년 발굴, 전문적 상담 및 정신과적 진료, 상시 모니터링 지원	
관리규제 및 사법지원	인권침해 예방 및 옹호, 진술조력인 및 법률지원, 전문 관리규제 지원	
자산관리지원	금전관리 교육,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청년)정책 접근성 지원	(청년)정책 정보 인지 및 이용 역량 강화, 서비스 접근성 지원	

① 고용지원

○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직업상담 및 교육, 취업알선, 직무지도 등 고용지원에 대한 정책 욕구가 발달장애 청년과 일반 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대다수의 경계선지능청년은 취업진입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개인별 다양한 고용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 대상 고

용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도 지원 내용과 접근 수준 등에 있어 욕구에 맞지 않거나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경계선지능청년은 취업을 시도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때 정보 제공 및 단순 취업 알선 중심의 지원이 아닌 일반 청년과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개인별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업 및 사회기능에 따라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장애인 고용정책 및 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사 정책대상자로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지원과 기업지원으로 대별하여 세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장애인지원에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단계별 취업지원을 제공하며, 현장 배치 후 지원을 통해 취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등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사업주 지원으로는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근로환경과 편의 조성을 위해 시설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부 제도 및 지원서비스를 경계선지능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고용지원의 욕구를 ‘고용지원필요도 검사’를 통해 판정하는데,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이를 기초로 경계선지능청년의 고용지원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는 청년 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기존 정책 및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취업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할 경우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수 있음. 또는 별도의 장려금을 설계할 수 있음. 그리고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를 별도로 신설할 수 있음. 무엇보다 경계선지능청년이 기존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이용자 발굴 및 서비스 홍보 등 서비스 접근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서비스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주거지원

-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고용에 대한 정책지원과 함께 주거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 욕구를 나타냄. 특히 부모 또는 시설로부터 자립한 경계선지능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여 있었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계선지능청년이 청년 주거 정책을 인지한 비율(39.4%)이 매우 낮게 나타남. 기존 청년 대상 주거 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시급한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음.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상품을 설계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일부 경계선지능청년은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확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지원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권리구제 및 사법 지원

- 연구 전반에서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협소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관계망 안에서 정서적 학대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14.8%) 사기, 성범죄 등에 연루(6.1%)되기도 함. 이에 경계선지능청년은 대부분 혼자서 침묵하거나 가족, 지인 등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권리구제가 부재한 것을 알 수 있음. 인권침해에 노출된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인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옹호하거나 전문적인 옹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경계선지능청년의 권리구제는 전문적으로 접근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원할 지원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영역 내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권리구제 서비스와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정책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④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에서 금전관리에 대한 지원과 미래준비 차원에서 노후 준비 및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많은 경계선지능청년들이 관계형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기회와 경험이 없다보니 온라인을 매개로 하여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기, 착취 등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나타남. 경계선지능청년들의 자립생활에 있어 금전 및 자산관리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를 위해 최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기존 청년정책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관리 지원이 포함된 제도로 재설계할 수 있음

⑤ 평생교육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 및 사회참여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제시되는 과업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을 필요로 하였음. 특히 청년 시기 본격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학습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남. 최근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였음. 이곳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발굴, 학력보완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평생교육,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등의 자립지원, 경계선지능인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경계선지능청년은 집중적인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청년이 보편적인 평생교육 차원의 생애주기별 학습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를 시작으로 몇 개 지

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확대가 예상되지만 온전히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우려됨. 중앙정부 차원에서「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경계선지능청년의 평생교육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센터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⑥ 정신건강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에서 높은 우울 수준을 나타냄. 정신과 약을 복용한 비율(31.5%)과 최근 1년 내 자살을 생각한 비율(27.6%)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적어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 등에서 매우 낮은 자기 효능감(그렇지 않음+매우 그렇지 않음 90.0%)을 가지고 있었음. 특히 은둔형 고립 경계선지능청년의 비율(8.6%)이 일반청년보다 8배 이상 높게 나타나 심각한 고립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왔거나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 또는 자신에 대해 수시 상담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과주치의제도’ 혹은 ‘전담 상담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청년센터 등에서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은둔형(고립) 경계선지능청년을 발굴하고, 주치의 혹은 상담사를 지정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진료 및 상담 개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⑦ 관계망 지원

- 연구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의 관계망은 매우 협소하였음.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19.8%)이 일반청년(18.8%)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시설보호(종료)청년의 경우 해당 비율이 37.1%로 나타나 신뢰에 기초한 관계망 형성이 매우 원활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의 경우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가족’이라고 응답(60.8%)해 사회 참여에 의한 정기적인 소통과 교류가 있는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의 관계 형성 및 교류 특성을 고려한 관계망 지원이 필요함.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청년이 또래 등 사람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다수 겪어오면서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음. 조금 더 주도성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역할 기대를 향상시키고, 자신을 옹호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청년정책 등에서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경계선지능청년 간의 동료지지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내 옹호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지원서비스를 신설할 수 있음

표 17. 주요 지원 영역별 제도 재설계 및 신설

지원영역		지원 내용
제도 재설계	고용지원	- 개인별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필요 - (장애인복지정책)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부 제도 및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청년정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취업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할 경우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재설계 또는 별도의 장려금 설계 - (청년정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사업 별도 신설
	주거지원	- (청년정책) 청년 대상 주거 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 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물량 할당 고려 - 단기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시급한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도 - (청년정책)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상품을 설계하여 지원 - (청년정책)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확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 마련(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지원 모델 마련)
	권리구제 및 사법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의 권리구제는 전문적으로 접근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원할 지원인력 배치 필요 -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권리구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정책대상자 확대 필요 - (장애인, 아동 권리구제정책)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정책대상자 확대 필요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대상자 확대 고려 - (청년정책)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관리 지원이 포함된 제도로 재설계 필요
제도 신설	평생교육 지원	-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경계선지능청년의 평생교육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에 근거하여 전국 평생교육센터가 확대 필요
	정신건강 지원	- 은둔형(고립) 청년 발굴, 정신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과주치의제도' 혹은 '전담 상담사제도' 신설
	관계망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 -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서비스 지원

(4) 경계선지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환경 조성

○ 최근 학령기 대상의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정도가 시작되었을 뿐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공식적 진단 체계 및 정책 지원이 부재하고, 당사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은 일상, 학업, 취업, 결혼 등에서 차별을 경험(37.2%)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에게 필요한 개인별 정책지원 외에도 경계선지능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지역 내 경계선지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와 동시에 경계선지능청년과 가족도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와 정책지원에 대한 옹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3)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 청년정책에서 경계선청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구체적으로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청년정책 리더십 및 접근성 강화,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제도 재설계 및 신설 등임

(1) 법적 기반 강화

- 전술하였듯이 우선적으로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에서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또는 반드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청년 지원에 대해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18.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추진과제	주요 개정 내용
청년기본법 개정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 명시, 이를 기초로 동법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 진행 필요 - 제4장(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경계선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대책 수립에 대한 별도 조항 신설

(2)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 결과, 경계선지능청년의 청년 정책의 인지 및 이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인지 비율: 29.0%, 이용 비율: 32.5%).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함’(42.9%),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름’(19.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음.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대상을 타겟화하여 전략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며,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정책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 또는 기존 플랫폼에 개설할 필요가 있음. 또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예: 청년센터 등)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정보제공 등을 조력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9.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	주요 내용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정기적인 정책 홍보 필요 -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정책 플랫폼’ 구축 - 청년관련 기관(예: 청년센터 등)에 경계선지능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정보제공 등을 조력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

(3) 청년센터의 기능 재정립: 정책소외청년 지원 강화

- 경계선지능청년은 개인별로 지원 욕구와 자립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 전술하였듯이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보 및 학습 제공 등의 수준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접근이 필요한 청년까지 다양한 지원 욕구를 나타냄. 언제든 지 찾아가서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요청할 곳이 필요함
- 지역 내 청년센터를 경계선지능청년의 사례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는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상호 교류,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각 지역별 청년에 대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 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국 185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청년 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 주거안정 지원, 문화 및 참여지원, 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청년센터는 청년기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는 심리적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를 위해 청년센터의 개소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선지능청년 등 정책소외 및 위기 청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 및 연계 등에 주력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청년센터를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사례관리 기관으로 고려할 경우 집중적인 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임.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관이 경계선지능청년의 전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청년기 집중 지원을 위해 청년센터와 적극 협업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청년센터에서는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관 등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20.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구분	주요 내용
청소년센터 기능 재정립 : 정책소외 청년 지원 강화	- 전국 185개소(2021년 기준) 설치 - 취업 및 창업 지원, 주거안정 지원, 문화 및 사회 참여 지원, 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청년기 필요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확보 -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청년들에게는 심리적 이용 접근성 강점 - 경계선지능청년 등 정책소외 및 위기 청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 및 연계 등에 주력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인력 배치 필요 - 집중적인 사례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필요

-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후 경계선지능청년의 서비스 진입 창구(gateway)를 청년센터로 하고, 전문 사례기관(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청년정책 외 타 정책 및 서비스 기관과 협업하는 구도를 제안함. 이를 위해 청년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정책소외 청년 대상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 인프라 확대 및 전담인력 배치가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소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종사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경계선지능청년은 청년센터를 통해 기본적으로 청년기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기본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조금 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년의 경우 청년센터가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모니터링 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위해 청년 센터는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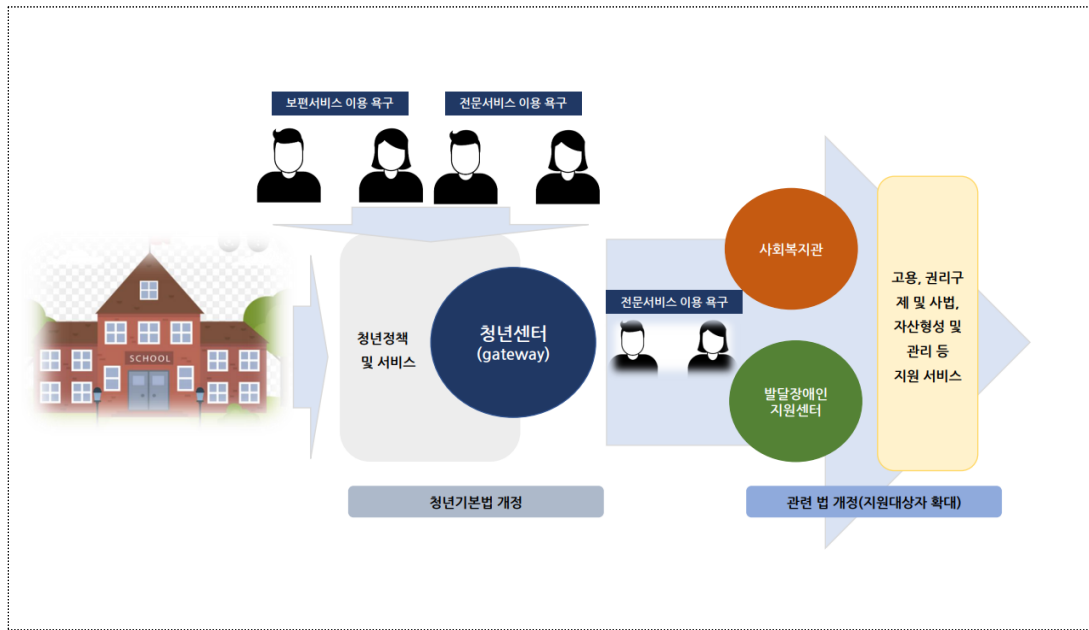


그림 2.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4)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제도 재설계 및 신설

-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지원은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 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필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주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 주거, 권리구제, 금전 및 자산관리, 정신건강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 중 청년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 지원을 위해 고용, 주거, 금전 및 자산관리, 정신건강 지원 영역에서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필요 제도를 신설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용지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체가 경계선지능청년을 고용했을 때 장려금을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것을 설계할 수 있음. 또는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사업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음
 - 주거지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도해볼 수 있음.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저리 대출상품을 지원할 수 있음. 일부 경계선지능청년은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확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지원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산 형성 및 관리 영역과 관련해서는 근로를 하고 있어도 과도한 채무, 사기, 경제적 편취 등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금전관리 교육 및 상담, 자산형성 등의 기능이 혼합된 패키지 서비스를 신설할 수 있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대부분 예금 및 대출 기능만을 포함하고 있어 금전 및 자산관리 욕구가 있는 청년의 경우 미래 준비 차원에서도 교육, 상담, 권리구제 등의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 지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전문한 바와 같이 청년정책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주치의 제도’ 또는 ‘전담상담사제도’를 신설할 수 있음. 기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등의 바우처를 확대하되, 은둔형(고립)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정신과적 질환이나 심각한 심리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전담 의사 또는 상담사를 배치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관계형성 지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두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의 관계 주도성과 관계 안에서 자신에 대한 역할 기대와 자신을 옹호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청년정책 등에서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경계선지능청년 간의 동료지지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내 옹호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 지원서비스를 신설할 수 있음

표 2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재설계 및 신설

추진과제	주요 지원 욕구	주요 내용
청년정책 재설계 및 신설	고용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 고용 시 지원 금액 차등화 또는 별도의 장려금 설계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사업 별도 신설
	주거지원	-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공공지원주택 등) 입주자 선정 시 취약계층 청년대상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부여 또는 일정 물량 할당 고려 - 우선 자립생활을 위해 주택 확보가 시급한 시설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적용 - ‘청년주거비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 저리 대출상품 설계 - 주거를 기반으로 한 지원서비스 마련(취약계층 청년 대상 주거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및 분쟁 처리, 주택 관리, 주택 이전 관련 정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지원 모델 마련)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경계선지능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뿐만 아니라 관리 지원이 포함된 제도로 재설계 필요
	정신건강 지원	- 은둔형(고립) 청년 발굴 - 정신적 건강을 집중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과주치의제도’ 혹은 ‘전담 상담사제도’ 신설
	관계망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 - 동료지지자(가칭) 양성 및 동료상담(경계선지능청년 간의 동료지지와 상담) - 시민옹호인 양성 및 옹호서비스 지원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패널토론 1-1.

북한배경청년

엄현숙 교수(국립통일교육원)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토론

엄현숙 교수(국립통일교육원)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 본 과제는 시의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적절한 주제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입국 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 파악과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
 - ‘북한배경청년’ 정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북한 출생과 북한배경청년 조사
 - 최근 5년간, 그리고 지금까지 입국자 중 **2030의 비율 증가**에 초점, 젊은 청년층이 많음에 유의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수혜 자격의 대상인지 여부가 북한배경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사회적응 및 자립의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주목
 - 더욱이 24세를 전후로 여러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여러 논문에서도 지적
 -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시점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으로 될 가능성** 내재
 - 중요하게는 3국 출생에 대한 집계 및 관리가 **학교를 통해**, 통일교육전담사와 일부 다문화담당 선생님들을 통해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냄
 - 성인이 된 후 출신지 등 자신이 **익숙한 사회로 복귀하려는 경향성**도 보인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 및 결과에도 영향

실태 분석

- 북한배경청년 중 저 연령층에서의 **대학 졸업 비율과 30대의 석·박사 비율 증가**
 - 북한 출생의 경우 한국 내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와 더불어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 **3국 출생**의 경우 4년제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기회 제한**
 - 일반 청년층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정부 및 민간 지원**에 의존
-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교육과 일자리 간 불일치 인식이 일반 청년층과 다름
 - 일반 청년들의 경우 진학에 노력을 들인 만큼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능력을 높게 평가
 - 사회경험이 부족한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충분히 못한 교육에서 찾을

정책지원 과제

- 연령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현행 청년 정책 기본 계획
 - 일반 청년의 연령대 구분과 북한이탈주민 **연령 불일치**
 - 출신지별 세분화, **다양한 가족배경**에 대한 이해 우선
- 지원체계의 쏠림현상
 - 가시적 성과 위주
 - 유사한 지원 서비스
 -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위주
- 주요과제
 - 등록금 지원 기간 제한 조정
 - 세어하우스 공급 확대
 - 여성 비율 증가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의 보완

정리하면

- 지원 대상의 학령과 연령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주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진행된 연구로
 -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호명하기 위한 용어로 ‘북한배경청년’을 주목한 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 실태 분석에 있어 북한 출생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으로 소외된 지점이 고루 부각**되었으며
 - 사회 진출 시 노출될 문제 및 취약점을 조명
 - 학교교육에서 주로 언급되는 학생과 부모의 교육 지원과는 분명 다른 양상에서 현재의 **중국 출생 청년의 위기**에 집중
 - 생애 주기별로 정부와 지원 주체들 간의 긴밀한 연계 내지는 **차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
-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현안이 불러올 **여러 논쟁의 지점도** 존재
 - 한국 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탈북민과 그의 3국 출생 자녀,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그들의 남한 출생 자녀로 연계되는 **재생산 구조**라는 점에서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 같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국내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 등 형평성 문제와도 관련 있음
 - 현재의 다양한 북한배경청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후속 연구로는 보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로드맵 필요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패널토론 1-2.

청소년부모

박미진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토론

박미진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연구의 중요성

- 미디어 등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양육 현실이 드러나고, 청소년기에 부모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매우 시의적절함.
- 특히 청소년부모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등을 통해 대상 집단을 정교하게 추정한 점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존의 연구 결과(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비교 분석 가능하도록 연구를 설계한 점이 돋보임.

2. 정책 대상과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연령대가 아동복지법의 아동 연령(0~17세)과 청년 기본법의 청년 연령(19~34세)에 중첩되는 이슈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합당한 지적임.
- 하지만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2페이지에서 1만 8천여 가구가 유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사실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므로 ‘소외’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함.
- 또한 청소년부모 스스로를 ‘청소년’부모로 인식하지 않고, ‘청소년’부모로 지칭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함. 청소년부모의 대부분이 19세 이상의 청년에 해당하고, 미성년인 청소년부모는 극히 드문 것도 사실임. 청소년부모의 모집단을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최신자료로 살펴보면(부록 표 참고), 2020년 기준 모(母)의 연령이 18세인 가구는 44가구이고, 17세 이하인 경우는 10가구에 불과함. 전체 청소년부모 가구 규모(3,754가구)에 비해 1% 내외로 매우 적음. 따라서 언론에서 위기 상황으로 비춰지는 사건들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3. 청소년부모 정책지원 과제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 정책 지원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상세히 제언하고 있어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전문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1) 청소년부모 통합 지원 체계

- 청소년부모 대상의 전국적 통합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매우 동의하는 바이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18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바임.
- 다만 청소년부모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줄 수 있는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가족센터에서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부모를 지역별로 5사례씩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대두되면서 신속히 해당 사업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가족역량강화사업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매우 한계적이며, 어렵게 발굴을 하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거의 부재하며, 지원 내용에 대해 전문성이 축적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에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활발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전문가의 축적된 노하우를 공적 영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적절한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정적인 공적 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함.

2) 장기적 지원 체계

- 청소년부모라는 새로운 집단이 대두된 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몇몇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존재함.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본 연구가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되며, 기존에 구축된 체계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매우 찬성하는 바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정책 대상을 분절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욕구를 판별하고, 자격 조건(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욕구 기반의 정책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함.
- 2022년 7월부터 시행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에게 현금(자녀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함.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은 다수 존재하고, 내년부터 도입될 부모급여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지원임. 청소년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함.
- 장기적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은 모든 관련 부처의 협업이 필요함. 현재 아동과 청년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정책 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라 분절적으로 지원이 되는 측면이 존재함. 또한 부처마다 지원하는 내용도 상이하여,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청소년부모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주거 관련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학업 관련 지원은 교육부에서, 취업관련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모든 서비스들이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제공되므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공급자 중심의 제도가 아닌,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4. 기타 사항

- 실태조사의 결과를 좀 더 풍부하게 제시해주었으면 함. 지금은 다른 조사의 결과(일반 청년부모)와 비교할 수 있는 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조사의 결과 내에서 집단 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들도 덧붙인다면 더 다양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표 13에서 건강 관련 정책의 필요도를 청소년부모와 일반 청년부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청소년부모의 특성(연령, 학력, 자녀수, 가구유형 등)을 하위집단 배너로 추가하여 집단간 응답 비율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면 유용한 정보로 활용 가능함.
- 현재 제시된 결과로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출산 지원 정책(63.4%)’과 ‘심리지원 서비스(14.9%)’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일반 청년부모는 ‘출산 지원 정책(47.8%)’과 ‘건강보험 확대 적용(18.5%)’에 대한 니즈가 더욱 높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더해 청소년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떤 정책에 더 많은 필요를 나타내는지, 혹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에서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가 같이 제공되면 좋겠음.
- 또한 실태조사의 대상자를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젊은 세대일수록 가사 분담 및 양육을 함께 참여하는 비율이 높는데, 조사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전체적인 양육 실태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제약이 존재할 수 있음. 물론, 군대 등의 이슈로 남성 조사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성별 쿼터를 두지 않고 조사를 하여도 여성이 대부분 조사되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1. 모(母)의 연령별 청소년부모 가구수

(단위: 가구)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Total	8,584	8,744	7,531	6,172	4,883	3,754
17세 이하	22	34	28	16	10	10
18세	120	123	92	78	53	44
19세	498	442	327	248	217	136
20세	939	911	751	539	405	344
21세	1,413	1,392	1,170	939	700	522
22세	1,849	1,765	1,599	1,265	991	777
23세	2,062	2,102	1,823	1,627	1,216	972
24세	1,681	1,975	1,741	1,460	1,291	949

출처: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원자료 (2022.8.20. 추출)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패널토론 1-3.

경계선지능청년

김동일 교수(서울대학교)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토론

김동일 교수(서울대학교)

1. 경계선지능청소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 확인한 점

: 네덜란드는 경계선지능인을 모든 사회적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로서, 네덜란드에서는 경계선지능을 지적장애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다양한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경계선지능인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요구를 탐색하여 그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적극적 모습으로 보여짐.

- 우리나라의 경우 지능지수 68(예: 경도 지적장애 학생)과 지능지수 74인 학생(예: 경계선급 지적기능성)은 실제 학업 및 비학업 수행에서 차이가 미미하고, 두 부류 모두는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학생은 특수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박윤희 외, 2022)
-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장애 명칭이 처음으로 바뀐 2010년 AAIDD 지적장애 정의 11판 매뉴얼의 지적장애인으로 더 높은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지원요구’(실질적으로 지적장애 절사점 밑의 경도 지적장애인) 챕터, ‘경계선급 지적기능성’(지적장애 절사점 위)개인들과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지적장애 정의의 한 요건인 ‘지적기능성에서 심각한 제한성’은 평균 미만의 대략 2 표준편차 더 낮은 지능지수, IQ 70-75 이하이며, 지능지수 절사점 위와 아래에 속한 사람들의 지원요구는 비슷.
- AAIDD 11판 매뉴얼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으로 더 높은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은 지적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경계선급” 혹은 “경도의 인지적 제한성을 가진 사람”(대략 IQ 70-75 상한선 약간 위로 기술적으로 지적장애로 진단되지 않는)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명료화해야 할 점

: 경계선지능 혹은 경계선급 지적기능성(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에 대한 국가적, 정책적, 법적 합의안이 여전히 필요함.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10.05.	"경계선지능인"이란 <u>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u>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	-------------	---

- "경계선 지능 위기 청소년은 지적 능력의 제한(IQ 71-84)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면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이 기대되는 청소년을 말한다." (김동일, 안예지, 2020) 지적 능력의 제한이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학습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로 여겨짐. 이때 적절한 지원이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의미함. 이상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학업적·사회적 적응과정에서 관찰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함.

3) 여전한 지능 위주 접근

- 우리나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적장애' 진단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능지수 70'을 지적 능력의 심각한 제한성의 '엄격한' 기준으로 사용하며, 지능검사(IQ tests)에 대한 '측정의 표준오차' '임상적 판단'과 적응행동에 대한 임상적 판단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은 채 지적장애가 판별되는 것이 현실임.

[판결] "지적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교과수행 상황 등은 참조자료에 불과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률신문 2022-10-11 오전 9:06:07

지적장애 판정을 할 때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수행 상황 등은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6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략)...

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이고,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A 씨는 2010년 8월경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서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돼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10년 뒤에도 전체 지능지수가 62로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해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후략)...

4) 청년기 발달과업에서 사회적 인지, 관계 능력, 적응행동 필수적 역할(연구중)

○ 사회적 인지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예: 친구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 몸짓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에 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관계나 호칭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예: 엄마가 이모 또는 고모가 되는 가족 간 호칭, 인칭 대명사 등).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자신이 실수하였을 때 인정하기보다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사회적 관계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예: 다른 사람이 슬프거나 화가 났는데 상관없이 행동하기 등).
타인과 적절하게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예: 가족이나 친구에게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예: 친구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말하기- “너는 키가 작구나” 등).
상대방의 말을 듣고 호응하며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새롭게 맺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운동이나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타인의 말을 쉽게 믿어 일탈행동을 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긴다.

○ 적응행동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타인과 함께 하는 사회생활 적응을 어렵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동의 계획 세우기를 잘하지 못한다(예: 여행이나 시험공부, 취업 준비 등).
시작한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예: 운동하기, 취미활동 등).
자신의 주위(예: 책상이나 가방 정리, 방 청소 등)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지 못한다.
스스로 금전관리를 잘하지 못한다(예: 용돈이나 월급을 받으면 계획 없이 한꺼번에 다 써버리기 등).
일상생활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예: 약속을 위한 이동 시간 계산, 일정 관리 등).
소셜 미디어 참여 시 그룹 대화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

2. 경계선지능 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 확인한 점

심리적으로 접근 용이한 서비스 진입 창구와 지원체계가 필요. 경계선지능청년은 국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복지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애인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이용할 서비스가 전무하다보니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함. 또는 장애인등록을 할 의사는 없지만 자신에게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있다면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를 나타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계선지능청년을 고려한 입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경계선지능청년은 보호기반(가정, 시설보호)에 따라 어려움의 수준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특히 시설보호(종료) 청년이 청년기 주거, 소득 및 경제생활, 정신 건강, 인권 침해 등 여러 방면에서 가정보호 청년보다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자립준비 이후 지지 기반이 부재하거나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었음. 지역 전환 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설보호 또는 자립준비 시기 관련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자립준비 이후 연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파악.

2)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소외청년 = 취약청년 => 북한배경청년, 청소년부모, 경계선지능청년
comorbidity

3)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재설계 및 신설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교육부 간의 다양한 지원책 부처 협의,
기초자치단체의 우선순위, 청년센터, 사회복지관, 자립지원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협력 네트워크

4) 법적,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의도적 중복, 의도적 단절?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에 대한 ()기본법, ()복지법의 정책대상 범위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패널토론 2-1.

정신건강

김현수 임상교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취약청년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방안” 토론

김현수 임상교수/교장(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청년행복학교 별)

1. 전체적인 측면에서

- 사회의 변화속도와 발달 주기, 발달 속도 사이의 문제
- 청년 개념의 재정립 : youth 혹은 young people은 몇 살 부터인가?
- 19살의 자립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청소년 - 청년 이행기의 재정립
- Emerging Adulthood 의 문제들 : 한국 가장 심각
- 고졸 이후 갑자기 자립시키거나 혹은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 자라긴 매우 의존적으로 자라난 상태에서 정체성 전환에 대해 아주 경직되고 사회적 지원이 없음
- Gag Year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위기의 청년이 되는 이유
 - 1) 갑자기 온갖 서비스가 중단됨
 - 2) 양육은 아주 의존적이고
 - 3) 자격이나 사회성 발달도 미약 : 해본 것이 공부밖에 없거나 놀거나
 - 4) 청소년기 충분한 알바경험이나 사회 예비경험이 없음

2.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십대 부모 청년 모두에게 사회가 어려운 점

- 1) 모두 소속감을 느낄 집단이 부족함
 - 2) 사회적 지지와 지원도 부족함
 - 3) 법 제도가 부족함
 - 4) 사회적 인식도 부족함
- 청소년이나 청년 자체가 모두 불안정한 소속감에서 비롯된 정체성 형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동일성과 차이성의 소외 : 다가서면 다르다고 하고,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다르다고 한다

** 경계선급 장애의 청년 : 장애가 있는 그룹에 가면, 장애가 없는데 왜 왔냐고 하고, 장애가 없는 그룹에 가면 가벼운 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함께 할 그룹이 없다

** 북한 이탈 청년 :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이라고 하고,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에 왜 있느냐고 한다.

3. 제도적 지원과 자원 연계

1) 사각지대를 찾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적 지원

- 사회적 합의 혹은 제도적 합의 이후 자꾸 집단으로서의 자리를 할당해야 한다
- 경계선 그룹, 장애 그룹에게 일정한 자리가 의무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 사회적 배려 전무함

2) 느리게, 천천히 하고 지연되고 성숙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다양성 지원

- one track 사회를 종언하기
- 전환기 지원 활성화 : 여행, 공부, 인턴쉽 등에 대한 지원 활성화
- 현재는 이 전환 과정을 모두 개인이 해결해야함
 - 북한 청년, 경계선 청년, 십대 부모들을 위한 일자리나 역할이 사회적으로 제공되고 일정하게 배정되어야 함
- 천천히 가는 트랙 필요
- 정신적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 획일적인 생존의 트랙에 북한 이탈 청년도 경계선 청년도, 십대 부모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고립감과 박탈감이 너무 큰 사회

3)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고질적 문제 : silo 효과

- 교육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복지부에서의 돌리기가 아니라 다 부처의 연합으로 촘촘히 채우기와 그 물틈으로 새는 것을 막아야하는데, 현재는 돌리기 사태가 큰 문제임
- 중복지원도 가능하게 해야함
- 더 많은 지원과 멘토링 필요
 - 청년청으로 통합되면 칸막이 효과가 줄어들까?

4) 청년도 복지가 필요하다

- 청년이기에 지원하는 것들
- 청년이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들 : 의외로 많다

5) 성공 모델 만들기

-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줄 어른과 함께
- 자신의 삶이 지향해야할 멘탈 모델이 자본주의적 성공 모델 말고 필요함

4. 경계선 지능 청년 이슈에 추가함

1) 경계선 지능 청년 이슈의 탄생 배경

- 사회 부적응, 직업 능력 부족, 은둔과 외톨이 생활
-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애매하고 모호한 사각지대의 청년들 다수
-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닌 상태
- 정도의 장애 혹은 경계선급 기능의 어려움 : 느끼지만 말로 하긴 힘든데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기란 어렵다

2) 그간의 해결방안 노력

- 경계선 지능 청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 (교육부) / 직업훈련? (여가부, 고용노동부) / 복지? (복지부)
- 청소년기까지는 교육이 이슈이고
- 성인이 된 경우는 직업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 : 일, 집, 사회적 커뮤니티
- 어느 쪽도 지원이 애매하고 지원 받을 수 없는데,
- 현재 미취업, 취업노력 혹은 취업노력 포기 상태
- 여가 문제도 본인과 부모에게 큰 부담 - 함께 놀아줄 사람, 함께 지내줄 사람이 없음
- 다수의 노년부부들이 이 자녀들을 돌보면서 가족 상황 악화
- 부모님들의 고민 - 시설에 맡기기에는 기능이 좋고, 그런데 혼자 지낼 수는 없다

3) 경계선 지능 청년 학교 운영 경험

- 10년 이상 3급 자폐성장애, 장애진단받지 못했으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청년들과 지내본 경험
- 진단보다 상태가 더 중요하고, 진단보다 상처가 더 중요했다
- 부모 의존적 생활로부터의 독립은 다소 가능해졌으나, 그 이후가 고민
: 청년행복학교 운영 후 여가에 대한 고민,
: 사회적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을 줄어드나,
: 일, 주거에 대한 고민은 지속됨

4) 국가 및 사회적 합의의 범주

-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지금의 과정
→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

: 기존 장애의 틀에 추가해서 장애에 준해서 지원할 것인지

: 특정한 상태를 묶어서 지원할 것인지

: 정기적으로 2년-5년마다 청년들의 취업, 주거, 금융, 사회적 지지의 형태

- 이번 연구가 더 광범위하게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적어도 각 지자체 마다 업무 분야의 대상으로 들어아가할 필요성

- 동시에 다른 질환이나 상태에 대한 비교 필요

예시) 치매 장애 → 치매 전 단계 - 경도 인지장애로 부르는 상태가 있고, 이 상태도 치매에 준해서 지원함. 그리고 평가와 소견에 따라 지원 영역이 달라짐

5) 경계선 지능 청년 개념의 국가적 합의 필요

→ 우려 : 국제적으로 단순 지능에 기초한 개념 퇴색

→ 모호한 청년들 계속 생김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을 제안하고 싶음

→ 경계선 지능이 아니라 경계선급 장애를 제안하고 싶음

→ 만일 지원을 사회가 하기로 결정했다면, 장애의 한 형태로 제안하고 싶음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패널토론 2-2.

금융취약

한영섭 이사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금융취약 : 관계금융조직을 통한 문제해결 모델”토론

한영섭 이사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들어가는 글

취약청년 주제발표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 중 금융취약 현상과 고립, 관계망 회복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관계기반 금융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1. 청년층 금융 이중구조

1-1 금융과잉과 금융소외

- 청년층은 단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님.
- 중산층 이상의 청년, 금융레버리지를 통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계층
- 중산층 이하의 청년, 금융소외로 인한 금융(신용)문제 발생
- 발표한 취약청년의 경우 금융소외는 더 심각한 상태임.
- 정책은 이를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2. 문제정의

- 금융취약은 크게 3가지 범주로 접근 필요. (금융서비스 접근권, 금융공급, 금융교육)

2-1 금융서비스 접근

-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는 공간적 접근성과 심리적 접근성이 포함된 개념
- 취약청년의 경우 공간적 접근성의 소외보다 심리적 접근성이 더 취약함.
- 금융기관 등 심리적 장벽은 금융정보 이용 및 활용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음. 금융정보를 SNS 등으로 접하다 보니 불법금융 등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금융정보를 해석하는 역량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 더 취약함.
- 금융회사,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등 금융정보에 대한 설명이 쉽게 되어 있지 않아 문턱이 높음.
- 믿을 만한 선배, 동료의 심리적, 공간적 접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견인 필요.

2-2 금융공급

-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취약한 대상, 소득이 불안정하고, 재산의 여부에 따라 공급이 제한 됨
- 또한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이자 등 금리가 차등으로 되어 있어 금융차별이 구조적임.
- 더욱이 청년층의 경우 기본적인 신용점수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신용점수를 쌓을 없는 구조임.

- 신용거래의 실적에 기반한 신용점수의 문제와 신용점수를 기반한 대출승인과 금리차는 차별임.
- 특히, 취약청년의 경우 이러한 금융공급의 차별은 더 심각한 상태임.
- 금융이용의 기본권 측면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함 상태임.
- 따라서 취약청년을 위한 별도의 금융공급 시스템이 필요함
- 나아가 앞서 북한배경 청년의 사례처럼 대학 등록금 등 교육복지 차원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 더 확충이 필요함.
- 금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과 사회권의 확대 측면으로 고려해야할 사회보장정책 구분이 필요함.
- 가계부채 문제가 커짐에 따라 생활에 필수인 영역은 (교육, 의료, 주거, 돌봄 등) 부채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취약청년의 경우 과도한 부채가 있음으로 인하여 (중산층 청년이 자산증식, 기회의 확대 측면 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빈번함. 부채 높, 심리적인 우울감, 자존감 하락 등

2-3 금융교육

- 현행 대부분의 금융교육은 자산관리, 증식하는 재테크에 기반한 교육에 방점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재테크에 기반한 금융교육은 중산층 이상 청년층에게는 용의할 수 있으나 중서민, 취약 청년에게는 상대적박탈감과 재무적무력감을 더 키울 수 있음.
- 공공영역의 금융교육을 통한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영역 교육은 금융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함.
- 또한 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도 병행되어야함.
- 나아가 저축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취동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필요.
- 단순히 자산을 증식하는 자산형성사업이 아니라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모아본 돈을 자신의 욕구에 기반하여 돈을 쓸 수 있어야 함.
- 기존이 청년 자산형성사업은 자산증식의 관점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외부자원, 자산을 다루는 역량을 기를 수 없는 상황임.
- 특히, 취약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은 교육적인 요소가 더 필요함.
- 미국, 영국 등 자산형성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취약청년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은 자산형성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방점을 찍고 부수적으로 자산이 쌓이게 만들어야함.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삶의 필수재는 저축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로써 사회보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념을 바꾸어야 함.

3. 문제해소 방향

- 취약청년의 금융소외, 고립,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 함께 저축하고 쌓여 있는 돈으로 필요욕구를 함께 조달하여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함.
- 민간의 대표적인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사례를 보면 작고, 느슨한 금융공동체로써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 안전망을 만들고, 존중과 환대의 분위기 속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음.
- 다만,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으로 전국으로 보편화 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자율성 등 보장이 필요한 상태임.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이 3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 취약노동자 자조모임으로 '노동공제'가 조직되고 있음. (경기도 라이더유니온, 경기북부노동공제회, 경기도 대리운전 노조, (안산)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2022년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2022년 4월 ~ 2022년 12월
- 나. 사 업 비 : 300백만원(5개 사업 각 60백만원 지원)
- 다. 사업대상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비정규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 라. 주요내용 : 취약노동자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이해대변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 5개 사업 지원

-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의 경우 경기도 사업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자조모임을 만들어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스스로 조직하여 만들고 있음.

* 공제(회)는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망을 만드는 조직체로 회원의 고통사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공제비를 내고 낸 공제비를 바탕으로 위험을 해소한다. 또한 소액대출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된 기금을 바탕으로 소액대출사업을 통해 작은 금융안전망을 만들고 있음.

4. 관계금융조직을 통한 전달체계

4-1 관계금융 조직의 핵심

- 존중하는 작은 공동체 (다양한 문화 등 소모임)
- 돈을 함께 모으고 쓰는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 소액신용대출, 소액공제 등 생활금융 안전망 구축
- 금융교육, 신용상담, 주거복지 등 서비스와 정보를 받는 전달체계

4-2 취약청년을 위한 관계금융 조직 지원

- 금융교육, 신용상담, 신용회복 등 전달체계 구축 필요.

* 광주청년드림은행 사례 (상담, 교육, 신용회복 및 연체예방 지원 (1인 80만원 분할지원)

* 민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적용, 청년생활경제상담사 활용

- 관계금융 공동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필요.

Ex) 집밥모임, 영화모임, 등산모임, 여행모임

- 미니자산형성프로그램 (10개월 프로그램) 사업

* 본인 저축 3만원 + 지원매칭 7만원 = 10만원 매칭, 100만원으로 욕구 실현

* 동기부여 -> 욕구디자인 -> 저축계획 -> 저축 -> 저축만기 -> 욕구실현(소비) -> 평가 -> 계획

* 10명 내외의 소그룹, 퍼실레이터 필요

* 10개월 동안 매월 소모임 + 생활경제금융교육 진행

〈프로그램 예시〉

1강 OT 꿈 그리기	2강 쫓지마 가계부
3강 쫓지마 금융	4강 쫓지마 저축
5강 쫓지마 신용	6강 쫓지마 대출
7강 쫓지마 보험	8강 쫓지마 돈 관리
9강 돈과 행복의 비밀	10강 졸업식

* 사례)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청년사업단 2회기 진행

* 예시) 부산국제영화제 여행저축

- 공동비상금고 사업

비상금 100만원 만들기 + 소액대출 300만원

개인 매월 10만원 납입, 9개월 / 1개월 10만원 지원 = 총 100만원 적립

100만원 적립 후 공동의 계좌로 돈을 묶어 두고 필요할 때 소액대출 300만원까지 대출

* 민간, 노동공제연합 (사)풀빵에서 현재 시행 중 (190명 가입자, 취약노동자 조직화 됨)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은 노동자 스스로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전국의 노동공제(회)를 지원하는 교육과 공동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7개 단체가 모여 있는 연합회로 공제품목 이용자 1,000명이 넘는 조직이다. (부울경)대리운전노동자 공제회 '카부기상호공제회', 라이더유니온, 청년신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봉제인공제회, 경기북부노동공제회 등 참여하고 있다.

4-3 제도적 기반

- 현행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노동조합 예외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을 통한 협동조합 공제허용 또는 특별법 필요.
- 사단법인을 통한 시범사업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4 의미와 과제

-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자조금융조직은 오랜 시간 공을 드려야 만들어 낼 수 있음.
- 관계(신뢰)를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함이라면 적절하지 않는 구조임.
- 그러나 앞서 언급한 취약청년의 경우 관계의 단절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돈(경제생활)을 매개로 하는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지망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관계금융조직을 통하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금융지원 등 전달체계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4-5 관계금융 조직의 한계

-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약청년의 금융공급의 소외를 당장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크로크레딧이 필요함. (청년햇살론 등 변형, 청년자립기금 필요함)
- 취약청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선배 등 역할이 매우 중요함. 존중과 환대의 문화 의식적 구축
- 관계금융 조직으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음.
- 반드시 사회보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종합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종합연구 | 협동연구기관 연구결과 보고]

패널토론 2-3.

지원체계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소외청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방안” 토론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서론

- 지난 정부의 정책 중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을 정책대상자로 공식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전정부 동안 청년기본법이 시행(20.8)되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20.9)하였으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20.12)되었음. 또한 보편적인 청년층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 이른바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논의도 일부 진행되었음
- 오늘 관련 대상별 발제문을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토론자는 이러한 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음

□ 발제문에서 제시된 대상별 지원 전달체계의 개요

○ 북한배경청년 지원체계

- 북한이탈주민 지위 획득 여부에 따라 지원서비스의 차이 존재
- 중앙정부 차원(통일부 주무부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정착지원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됨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총괄 및 조정업무(통일부), 예산배정(기획재정부), 북한이탈주민 학력 인정 및 청소년교육, 대안학교 인가(교육부), 생계 및 의료급여 지급(보건복지부), 취업보호담당 관제(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기능이 분산
- 중앙부처, 지방정부, 하나센터 등 각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체계의 각 수준별 업무 역할 재정립 필요.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 필요
-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의 허브로서 기능 강화

○ 청소년부모 지원체계

-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정책 대상
- 저소득 청년·청소년 부모(부부)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청소년부모가구의 기준 소득이 60% 이하일 때,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체계 부재: 청소년부모 대상의 특화사업은 전국 93개소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족역량강화 사업이 거의 유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 대부분은 청소년부모를 특정하여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청소년부모 발굴·지원 체계 마련 필요: 임신·출산, 산모·아동, 양육·자립,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4월 기준 전국 30개 지역 보건소로 확대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더불어 이를 시군구의 취약 아동·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드림스타트)와 연계 고려
-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체계(보건소,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별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부모 발굴 및 지원, 정보제공 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
- 지역 청년센터의 종합정보 제공기능 강화

○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 경계선지능청년: 만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에 해당되는 자
- 지원체계: 접근용이한 보편적 사례관리 지원체계내 차별화된 개인별 지원
- 고용, 주거, 권리구제 및 사법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지원, 평생교육, 정신, 관계망 등 전문적 서비스 및 제도 재설계
- 청년센터의 기능 재정립: 정책소외청년 지원 강화, 지역 내 청년센터를 경계선지능청년의 사례관리 기관으로 지정 필요. 센터는 2021년 기준 전국 185개소가 설치. 복지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 정책소외청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방안 구상

○ 지원 전달체계의 구조

- 전달체계는 공공, 민간 그리고 민관협력체제로 구분할 수 있고, 급여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관련 전달체계가 나누어짐. 보건복지부 소관의 경우, 대상별(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 노숙인, 지역복지, 기타시설 등)로 다양하게 구분되며, 여성가족부 소관은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이 있음
- 공공의 대표적인 전달체계는 중앙-광역-기초-읍면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임. 그 외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별도로 설치되는 구조이고, 주로 중앙-광역(시설 혹은 센터)-기초(시설 혹은 센터)로 운영됨

○ 전달체계의 기본 요건

- 원칙: 통합성,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 접근성 등 여러 원칙을 고려함
- 컨트롤타워: 사업총괄 조정기능, 서비스 개발 등
- 게이트웨이: 대상자의 접촉 지점, 서비스 직접 전달, 연계 및 협력
- 업무방식: 윈스톱(관련 정보의 통합과 집중), 사례관리(개인별 지원), 관련기관과 연계와 협력
- 고려사항: 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업무 운영체제로 구성되므로, 서비스 특성에 맞게 현장성에 기반한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임. 또한 대상자가 소규모이거나 공간적 산재가 많은 경우, 조직체계나 설치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예산수반 사항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시작 후 본사업으로 안착하는 방안이 유효함

○ 정책소외청년 지원 전달체계 구상

- 북한배경청년 지원체계: 광역 하나센터+ 시군구(거주지보호담당자)+시군구 통합사례관리 협력 체계 유력
- 청소년부모 지원체계: 건강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연계 체계 유력
- 경제선진청년 지원체계: 제안한 청년센터가 장점이 많음. 발제자가 제안한 모델 유력. 청년 주 사업+추가사업 부여(센터부설 사업방식: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수용성 증가 필요). 센터의 복합·다기능화
- 대상자의 상이성으로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결국 대상자별 지원체계가 효율적
- 대상자는 접근성을 고려할 때, 결국 기초단위인 시군구로 수렴됨. 기초단위 조직내 청년정책 총괄 부서(과나 팀) 설치가 필요함. 개별 사업부서에서도 대상자 확대가 필요

※ 지자체 청년 관련 조직 현황

- 지자체 청년 관련 조직은 지역의지에 따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2개팀)
 - 대전 대덕구: 미래교육과-청년인구정책팀(팀장 포함 3명)
 - 전주시: 청년정책과-청년정책팀과 청년일자리팀(2개팀)
 - 증평군: 예산감사관-인구통계팀(관련 업무담당자 2명)
- 실태 요약: 대부분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정책소외청년에 대한 지원은 곤란

- 읍면동의 경우는 상담, 신청, 접수, 정보제공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전문적 개입은 전문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 읍면동에서 정책소외청년에 대한 발굴, 정보제공 및 연계기능을 수행해야 함
- 사례관리 방식 적용: 3개 대상군 모두 개인별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방식의 개입 필수
- 사례관리는 결국 지역자원 중개모형에 가까우므로 관련 자원이 지역에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또한 고용,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특수한 욕구일수록 특별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복지조직에서의 인식 강화

- 청년을 보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단계는 아직 초기 상태. 기존 아동-노인-장애인-등의 범주에 익숙한 상황으로, 정책소외청년에 대한 개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단계
- 담당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요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5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